정책연구 2016-5

#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 구 진**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양은경**(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 연구 요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주민주도의 생활자치가 강조되며,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을 획득하는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재단의 현황과 실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지역재단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재단 설립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외 지역재단의 성공·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환경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형 지역재단 표준모델(안)을 개발·설립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유형별 모델을 정립하여 지역재단 시범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한 지역재단 모델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재단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2. 주요 연구내용

### □ 국내·외 지역재단 현황 및 운영 사례

○ 국내에는 천안풀뿌리희망재단,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등의 지역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음

– 국내 지역재단의 경우 사업유형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효율적인 지역자원을 동원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재단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낮은 설립자본금과 재정적 지원 부재 및 기부에 대한 지역주민(국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국외에서의 지역재단은 1914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클리브랜드 재단을 시작으로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산·발전되고 있으며, 현재 70여국가에서 1,840개 이상의 지역재단이 존재함(WINGS, 2015)

– 외국 지역재단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기부자의 욕구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기부자들이 기부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기부자의 지속적인 기부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고 있음

### □ 한국형 지역재단의 정의

○ 한국형 지역재단은 전통적인 지역재단의 정의와 같이 재정적 부문만을 포함하는 형태의 지역재단(I)과 다양한 지역공동체 및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등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문과 역량강화부문, 행정적부문을 모두 포함한 형태의 지역재단(II)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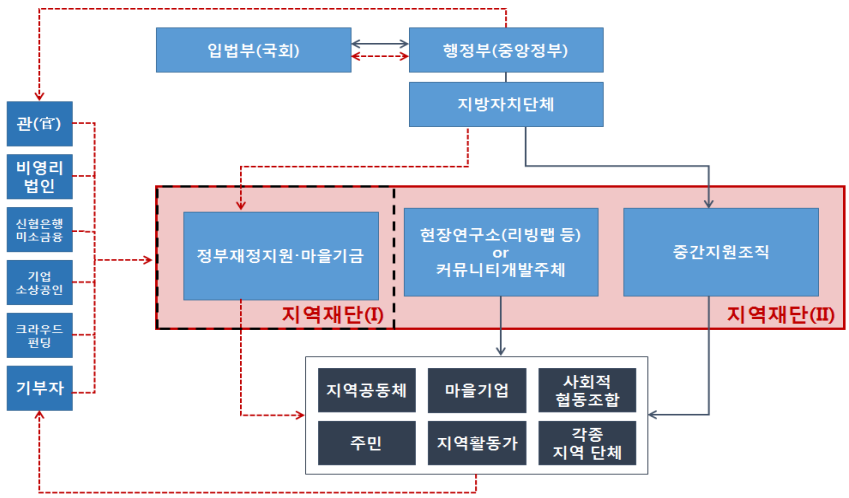


<그림> 한국형 지역재단 모형(안)

– 이러한 지역재단(I)과 지역재단(II)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특징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지원센터 등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지역의 현실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안)

❍ 한국형 지역재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국비 지원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기금과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역사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재단(지역재단과 동일)을 법률적, 제도적 근거로 할 필요가 있음

– 즉 불특정 다수에 의한 기부금 모집을 중심으로 지역재단이 성장한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 비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다양한 한계(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지역공동체 기금 및 지역공동체 재단 관련 조항을 통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또한 기부금에 의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현실적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등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마을 지원활동 등을 펼쳐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야하기 때문임

○ 지역재단 모델 유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재단의 설립·운영 주체 및 지역적 특징,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유형, 사업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우선, 설립 및 운영 주체별로는 민설민영, 민관협치, 관설민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리적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지역재단의 규모 및 지원서비스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재단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 또는 사업영역에 따라서는 크게 특화형과 통합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화형은 다시 지역경제형, 지역복지형, 지역공동체형, 지역재생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한국형 지역재단의 모델 유형(안)

○ 사업목적과 사업영역은 대다수 지역재단이 유사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구분기준에서 제외하면, 설립 및 운영주체와 지역적 특징에 의해, 다음과 같은 9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도시형과 결합한 도시형-관설민영, 도시형-민설민영, 도시형-민관협치의 3가지 유형과 도농복합형과 결합한 도농복합형-관설민영, 도농복합형-민설민영, 도농복합형-민관협치의 또다른 3가지 유형, 그리고 농산어촌형과 결합한 농산어촌형-관설민영, 농산어촌형-민설민영, 농산어촌형-민관협치 등 총 9개 유형으로 지역적 특성과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됨

□ 한국형 지역재단 설립 추진방안(안)

○ 지역재단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재단의 설립지원 및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다양한 행정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단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시범사업의 추진
- 지역재단 신뢰성 증진을 위한 지역재단 인증제도 도입 검토와 지역재단 연합회 설립 및 운영
- 지역재단 관련 매뉴얼 개발과 기부활성화모델 개발 및 보급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헌) 수행을 지역재단과 연계 제도화
- 설립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
-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에 의한 세제혜택 지원

○ 지역재단의 설립 및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민간모금과 민간 기부활성화를 통한 기부금 확대
-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의 연계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정책사업(고향세, 마을만들기) 보조금 사업과 연계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단 관련 역할
- 지역사회 내 지역재단에 대한 인식제고
- 지역재단관련 조례 제정 등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지역재단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기부자 관리 지원
- 지역기업의 지역재단을 통한 사회적 공헌 유도
- 지역재단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의 지원

○ (제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재단의 설립·확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나,
- 지역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와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역재단 행·재정지원 방안 마련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차 례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이론적 논의 ····· 9**

제1절 지역재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1

1. 지역재단의 개념 ····· 11
2. 지역재단의 역할 및 기능 ····· 12

제2절 지역재단 동향 및 역사 ····· 16

1. 지역재단의 세계적 동향 ····· 16
2. 지역재단의 역사 ····· 20
3. 지역재단 지원조직 ····· 21

제3절 한국형 지역재단에 대한 논의 ····· 23

1. 지역재단의 필요성 ····· 23
2. 한국형 지역재단의 정의 ····· 25

**제3장 지역재단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 27**

제1절 국외 지역재단 ····· 29

1. 실리콘밸리 지역재단(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 ····· 29

2. 샌프란시스코 지역재단(The San Francisco Foundation) ····· 31
3. 캘리포니아 지역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 33
4. 마린 지역재단(Marin Community Foundation) ····· 35
5. 클리블랜드 지역재단(Cleveland Foundation) ·· 38

제2절 국내 지역재단 ····· 39
1. 개요 ····· 39
2. 설립현황 ····· 40
3. 재정현황 ····· 42
4. 운영현황 ····· 46
5. 사업현황 ····· 46

제3절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 50
1. 개요 ····· 50
2. 설립현황 ····· 51
3. 재정현황 ····· 54
4. 운영현황 ····· 56
5. 사업현황 ····· 57

제4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59
1. 설립 ····· 59
2. 운영 ····· 59
3. 사업 ····· 60
4. 재정 ····· 61
5. 시사점 ····· 64

**제4장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 67**

제1절 기본방향 및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안) ·· 69

1. 기본방향 ····· 69
2. 지역재단 모델(안) ····· 71

제2절 한국형 지역재단 설립 추진방안(안) ····· 85

1. 설립 및 운영개요 ····· 85
2. 지역재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90
3.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 94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99
5. 지역재단 관련 정책사업 추진 ····· 101

**제5장 결론 및 요약 ····· 107**

**참고문헌 ····· 113**

**부록1 국내 지역재단 현황 ····· 115**
**부록2 유사 지역재단 현황 ····· 125**
**참고1 기부금품 모집 제도 ····· 131**
**참고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 133**
**참고3 비영리 재단·사단법인 비교 ····· 135**
**참고4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136**
**참고5 현행 지역재단 설립절차 ····· 138**
**참고6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경상북도) ·· 139**
**참고7 성남이로운재단 정관 ····· 144**

# 표 차 례



<표 2-1> 국가별 총 유동자산과 보조금(2009년) ····· 19
<표 2-2> 지역 활성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요소 ····· 26
<표 3-1> 실리콘밸리 지역재단 주요사업 ····· 31
<표 3-2> 샌프란시스코 지역재단 주요사업 ····· 33
<표 3-3> 캘리포니아 지역재단 주요사업 ····· 35
<표 3-4> 마린 지역재단 주요사업 ····· 37
<표 3-5> 국내 지역재단 설립개요 ····· 40
<표 3-6> 국내 지역재단 설립개요 ····· 42
<표 3-7> 국내 지역재단 수입현황 ····· 43
<표 3-8> 국내 지역재단 운영 현황 ····· 46
<표 3-9> 국내 지역재단 모금사업 현황 ····· 47
<표 3-10> 국내 지역재단 배분사업 현황 ····· 49
<표 3-11>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설립개요 ····· 51
<표 3-12>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설립개요 ····· 53
<표 3-13>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 ····· 54
<표 3-14>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운영현황 ····· 56
<표 3-15>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사업 현황 ···· 58
<표 3-16> 국내 지역재단 운영 현황 ····· 60
<표 4-1> 설립·운영주체별 지역재단과 유사재단의 구분 ····· 72
<표 4-2>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재단의 구분 ····· 73
<표 4-3> 사업목적 및 사업영역에 따른 (유사)지역재단의 구분 ····· 74
<표 4-4>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유형(안) ····· 75
<표 4-5>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유형(안)별 특징 ····· 77
<표 4-6>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 비교 ····· 86

<표 4-7> 지역재단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 ····· 91
<표 4-8> 유사재단의 자산규모 ····· 95
<표 4-9> 부처별 마을공동체 관련 근거법 및 세부사업 현황 ····· 97
<표 4-10> 지역재단의 재원규모별 주요활동 ····· 102
<표 4-11> 지역재단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기준 ···· 103

#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 분석틀 ····· 7
<그림 2-1> 지역재단의 특징 중요도 ····· 14
<그림 2-2> 지역재단의 요소 ····· 15
<그림 2-3> 지역재단 설립현황(2000-2014) ····· 16
<그림 2-4> 지역별 년도에 따른 지역재단 설립현황 (2000-2010년) ····· 17
<그림 2-5> 신규 지역재단 설립 현황(2010-2013) ····· 18
<그림 2-6> 2010년 지역재단의 국가별 설립현황 ····· 18
<그림 2-7> 한국형 지역재단 모형(안) ····· 26
<그림 3-1> 국내 지역재단 수입현황 ····· 44
<그림 3-2> 국내 지역재단 후원금현황 ····· 44
<그림 3-3> 국내 지역재단 지출현황 ····· 45
<그림 3-4>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수입현황 ···· 55
<그림 3-5>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지출현황 ···· 55
<그림 3-6>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수입액, 단위: 천원) ····· 62
<그림 3-7>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수입비율) ····· 62
<그림 3-8>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지출액, 단위: 천원) ····· 63
<그림 3-9>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지출비율) ····· 63
<그림 4-1> 한국형 지역재단 기본방향 ····· 69
<그림 4-2> 지역사회(공동체) 생태계 개념도 (전대욱, 2015) ····· 76
<그림 4-3> 지역재단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 88
<그림 4-4> 지역재단 사업추진 방향(예시) ····· 89
<그림 4-5> 지역재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예시) ··· 90

<그림 4-6> 지역재단 운영재원 확보방안 ····· 94
<그림 4-7> 고향희망심기운동 ····· 96
<그림 4-8>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단계 ····· 100
<그림 4-9> 지역재단 시범실시 단계 ····· 101
<그림 4-10> 지역재단 시범실시 추진계획(안) ····· 101
<그림 4-11> 지역재단 단계별 지원정책 ····· 104

#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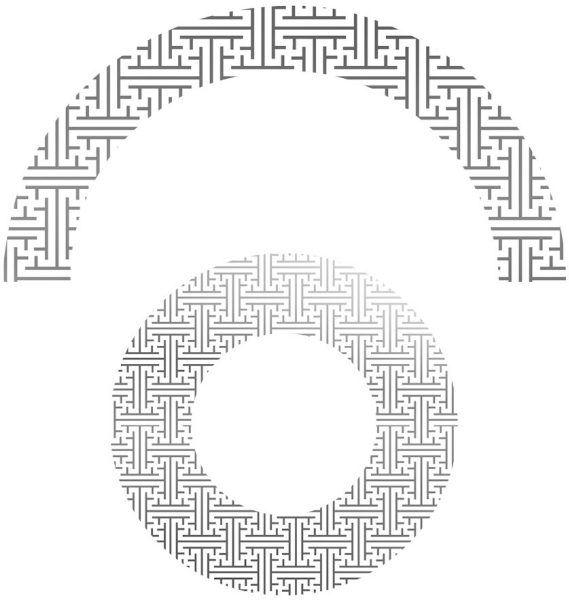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주도의 생활자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문제를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참여로 자원을 획득하는 민간주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현 시대의 증가하는 사회적 요구 및 문제해결은 정부의 역할과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교육·복지·문화·환경 등 사회 전반적 공익부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민간의 자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상기 내용의 인식하에 다양한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1]을 설립·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었음

– 하지만 지역공동체 및 주민조직의 전문성 부족을 비롯하여 재정적 자립기반 취약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지속가능한 활동 및 사회적 자본축적에 한계, 지속적인 재정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며,

– 중간지원조직 또한 행정의 역할대행이라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행정 의존

1) 중간지원조직 : 행정과 민간간의 중재자, 민간과 민간간의 협력 및 조정자, 부족한 민간역량의 보완 및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이며,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

적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자원(인재, 자금, 정보 등)을 제공, 네트워크를 촉진하며, 가치를 창출하는데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존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지역공동체와 주민주도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민간단위의 통합적 지원창구로써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재단은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의 재단”으로 즉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지역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참여 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비영리 민간법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재단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활동가, 각종 민간비영리단체, 공동체 기업 등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발전을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역재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재단의 기능은 크게 지역사회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비영리단체나 공동체 기업에 재정을 지원,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 공익활동가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를 비롯한 주체가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활동(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재정적으로 자립 혹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역재단의 필요성이 증대됨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에 있어 지역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지역재단의 제도화를 비롯한 지역재단의 생태계 조성은 지역재단을 설립하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 국내에는 천안풀뿌리희망재단,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등의 지역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지역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외에는 70개국에 약 1,840개의 지역재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재단 이외에도 유사한 공익재단을 비롯한 자선기관, 미소금융, 새마을금고 등 지역에서 재정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지역의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형태는 없음

– 관련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 분석을 통해 지역재단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역재단의 현황과 실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지역재단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재단 설립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외 지역재단의 성공·실패 사례를 통해 정책·환경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형 지역재단 표준모델(안)을 개발·설립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유형별 모델을 정립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한 지역재단 모델유형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재단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재단과 유사 지역재단에 관하여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가 있는 국내·외 지역재단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 이후 현재까지의 지역재단의 제반사항 및 실태 등을 검토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재단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형 지역재단의 추진전략 및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재단 및 한국형 지역재단을 개념화하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가 있는 국내·외 지역재단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지역재단의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한국형 지역재단의 설립(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그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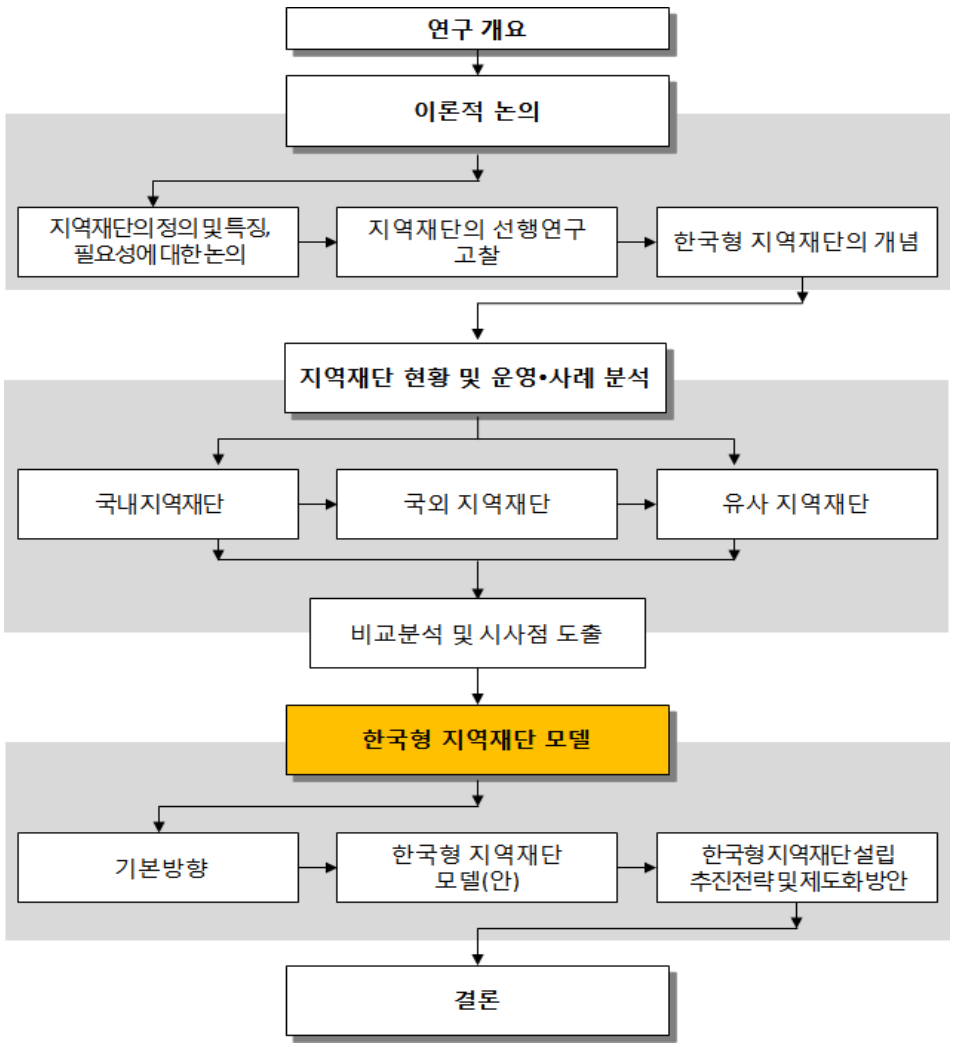
연구 개요
이론적 논의
지역재단의 정의 및 특징,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지역재단의 선행연구 고찰
한국형 지역재단의 개념
지역재단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국내지역재단
국외 지역재단
유사 지역재단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기본방향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안)
한국형지역재단 설립 추진전략 및 제도화 방안
결론

<그림 1-1> 연구 분석틀

##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조사·분석

○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 모델과 관련하여 자료수집과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을 개발하고 제언하기 위해 논의함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역재단의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 검토
- 국내·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그리고 내부자료 검토
- 지역재단과 관련된 법과 제도, 지원체계, 관련 계획 등 직접적인 정책자료에 대한 리뷰 및 분석
- 기타 정책자료 및 사례분석 등을 위한 보도자료 및 관련 퍼블리케이션, 멀티미디어 자료 등에 관한 미디어 서베이(media survey)

□ 사례연구 및 면담조사

○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들의 사례분석

○ 지역재단 및 유사 지역재단의 실태·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인터뷰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 지역재단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자문의견 수집

# 제2장
# 이론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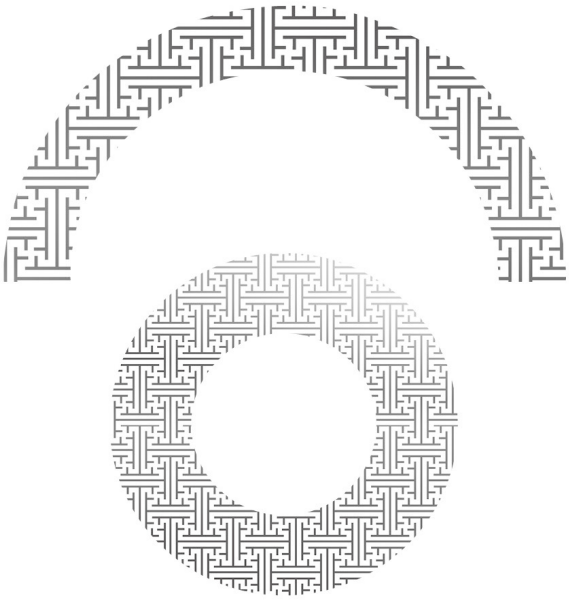

제1절 지역재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지역재단 동향 및 역사
제3절 한국형 지역재단에 대한 논의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지역재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지역재단의 개념

○ 지역재단이란 특정지역 범위내에서 설립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기금을 모집하여 기금을 사용하며, 연대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음(김미현, 2014, 아름다운재단, 2007)

- 세계지역재단협의회(Worldwide Initiatives for Grantmaker Support, WINGS)는 지역재단을 기부자들로부터 모은 기부금으로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단의 사명에 따라 필요한 단체에 배분해주는 재단(Grantmaker)으로 정의하고 있음
- 미국지역재단협의회에서는 지역재단을 면세, 비영리, 자치, 대중적 지원, 비분파적인 특징을 가진 자선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많은 독립된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지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광범한 편익을 도모하며 그 범위는 주(state)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 UKCF(UK Community Foundation)에서는 지역재단을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여, 다양한 목적의 기금축적과 그 수익을 통해 지역단체들에게 배분하고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한 지역재단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지, 환경, 교육, 경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고, 지역의 필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임(아름다운재단, 2007)

- 박원순(2011)에 의하면, “지역재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지원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돕기보다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단체들을 지원한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역재단은 지리적 범위를 근거로 지역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갖고 기금을 모집하는 등의 자원 형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편익 도모와 공공의 이익 달성, 지역사회의 변화·발전을 위해 자원을 지원·배분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때 자원은 조성된 기금을 포함하고,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배분하며, 지역사회 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자생적 역량강화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 지역재단의 역할 및 기능

○ 지역재단은 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자원 구축을 목표로 기금을 모집·조성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조직으로써 WING 2010에서는 지역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공익 추구의 측면에서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
–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기부자를 발굴·지원하며,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기금모집 등의 자원을 개발
– 지역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자발적 조직들의 협력관계 구축
–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
–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

○ 또한 Global Status Report 2008에서는 지역재단에서의 특징을 비롯한 역할과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지리적 범위 안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
- 다른 조직과 정부, 기부자로부터의 간섭이나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유지
-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시민사회의 위원회로써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역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 기타재단, 비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기부자를 발굴하고 기금을 개발·조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원을 형성
- 기부자의 자선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부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 지역공동체의 현안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찾아 해결하기 위한 촉매자이자 조력자, 협력자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수행하여, 광범위한 지역공동체의 리더십과 파트너십 활동 고취
- 지역재단의 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개방되고 투명한 정책과 실행
- 정기적으로 지역재단의 목적과 활동, 재정상태를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에 책임

❍ 그러한 지역재단의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①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② 기금조성과 ③ 지역사회의 통합과 신뢰 구축, ④ 지역 기금 발굴, ⑤ 조직내에 지역활동가 보유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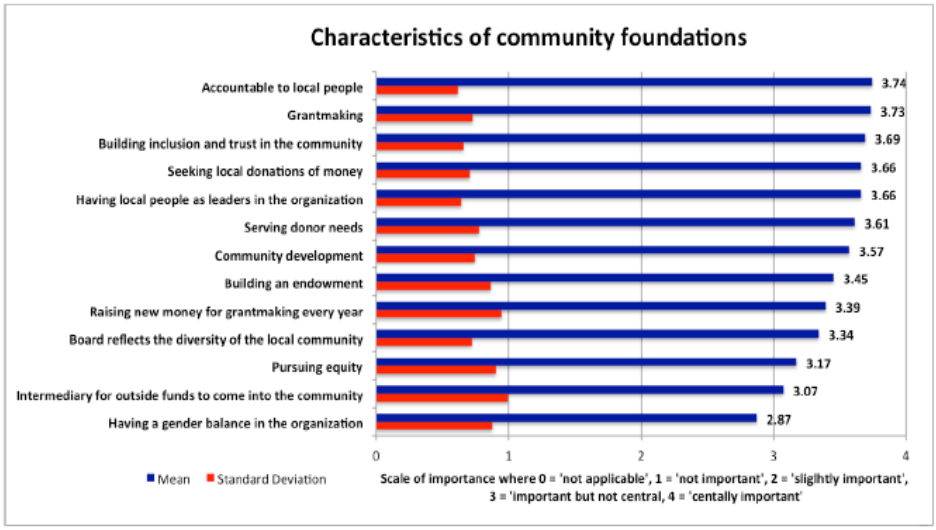


<그림 2-1> 지역재단의 특징 중요도

○ WING 2010에서는 상기와 같은 특징을 지닌 지역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요인에 대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지역사회의 리더십 및 자선의 역할이 지역재단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 재단 사업 및 기금, 풀뿌리운동의 역할,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역재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 유리한 법적·재정 정책, 양자간·다자간 사업 및 기금 등은 약간의 역할을 수행

– 특히 완전하지 않은 정부서비스 및 정치 환경의 변화는 지역재단 형성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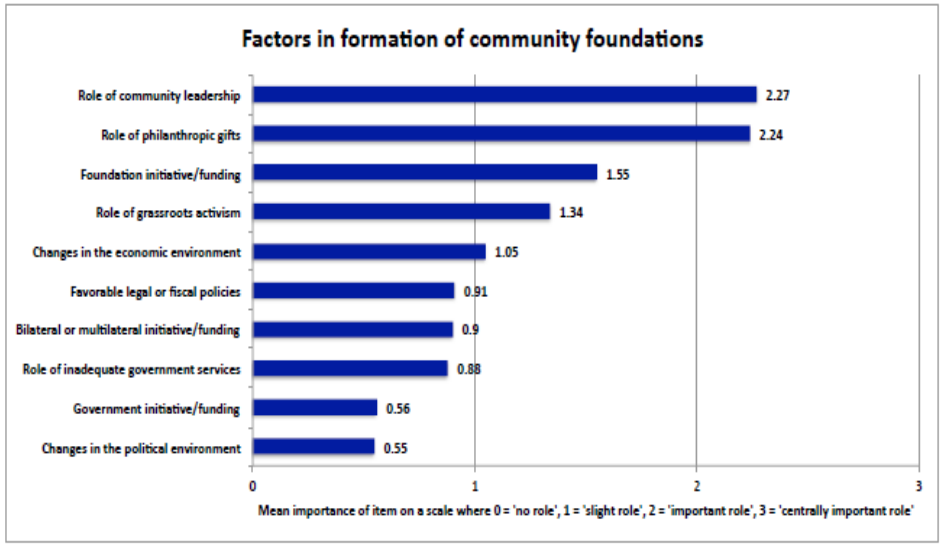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재단의 요소

## 제2절 지역재단 동향 및 역사

### 1. 지역재단의 세계적 동향

○ 지역재단은 1914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클리브랜드 재단을 시작으로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산·발전되고 있으며, 현재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840개 이상의 지역재단이 존재함(WINGS, 2015)

– 지역재단은 2000년 900개에서 2014년에는 대략 두배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67개의 신규 지역재단이 설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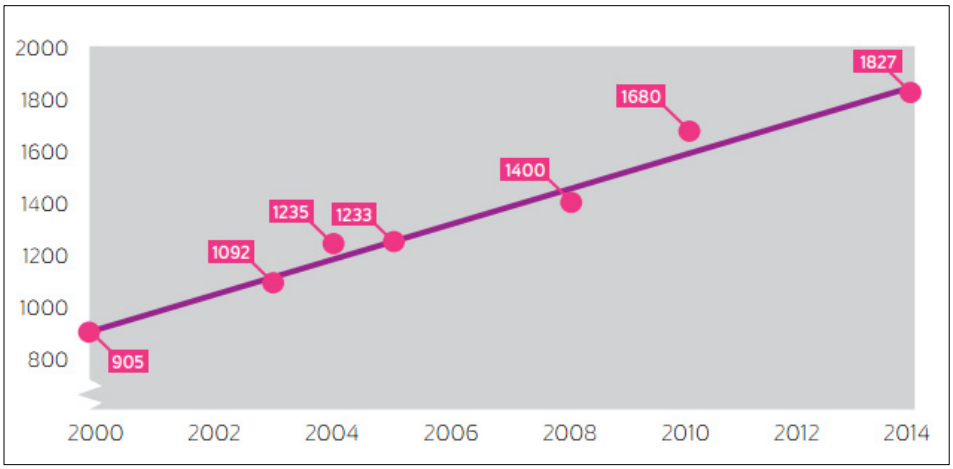


<그림 2-3> 지역재단 설립현황(2000-2014)

참고 : WINGS(2014), A Special Look at Organizations Serving Community Philanthropy

○ 북미지역은 지역재단이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지역에서 지역재단 설립은 가장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럽은 2000년대 103개의 지역재단에서 10년 동안 6배가 증가하였으며, 정부가 복지자원 마련을 위하여 지역재단 발전을 지원하였음

– 북미지역에서는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지역재단은 민간주도로 활성화되었음
– 그 외 지역은 전체에서 100개 이하의 지역재단을 설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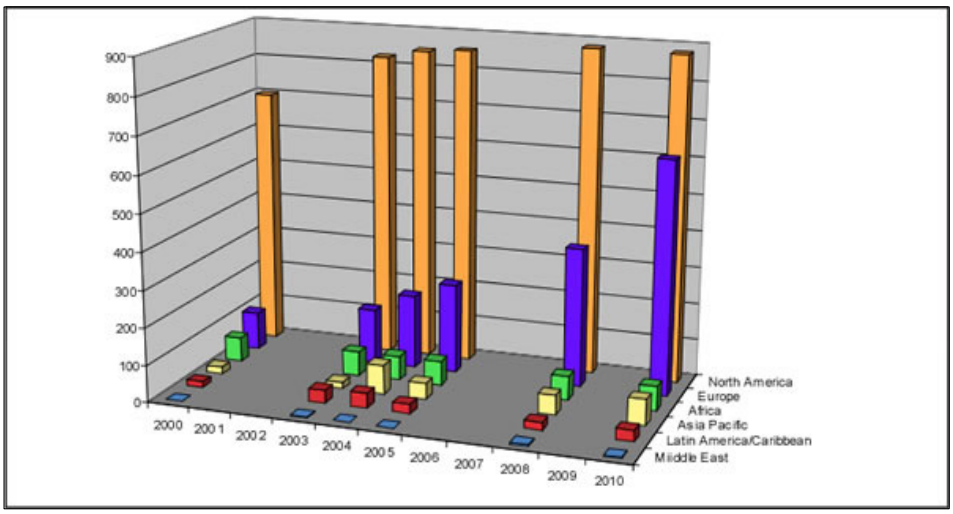


<그림 2-4> 지역별 년도에 따른 지역재단 설립현황(2000-2010년)

참고 : http://www.wings-community-foundation-report.com/

❍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독일(72개)과 우크라이나(16개)에서 지역재단이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특히 유럽에서 성장이 두르러지고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독일을 제외한 중앙유럽과 러시아가 신규 지역재단 성장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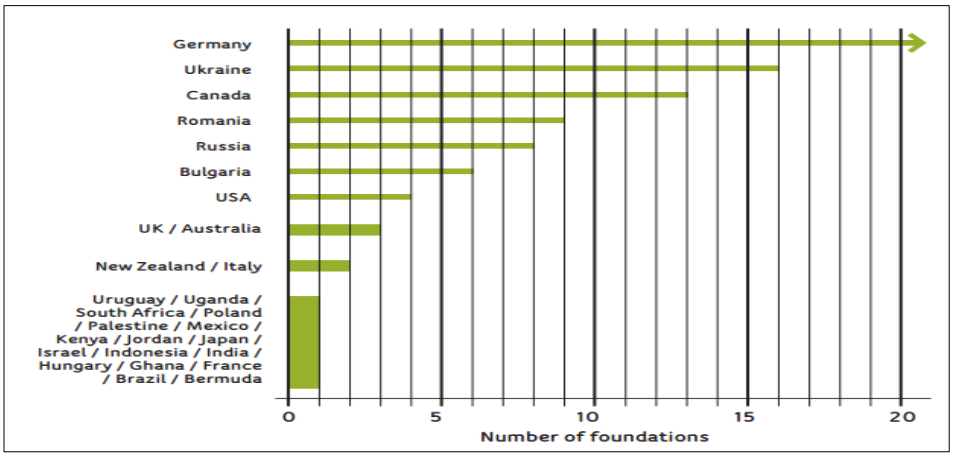


<그림 2-5> 신규 지역재단 설립 현황(2010-2013)

참고 : WINGS(2014), A Special Look at Organizations Serving Community Philanthr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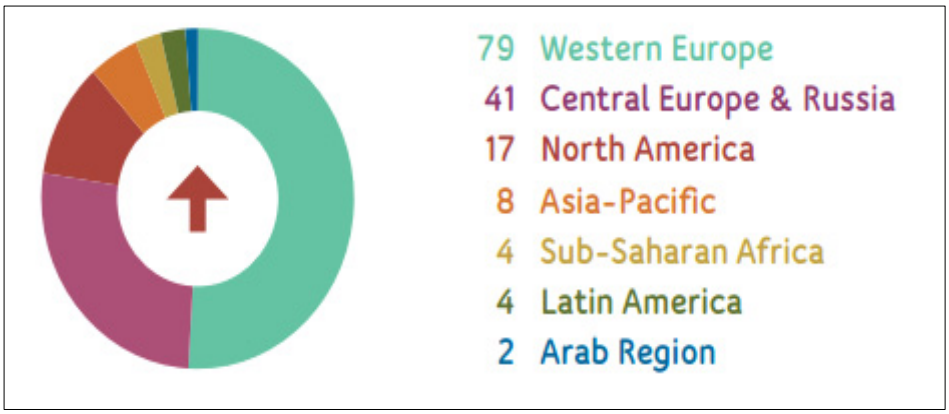


<그림 2-6> 2010년 지역재단의 국가별 설립현황

참고 : WINGS(2014), A Special Look at Organizations Serving Community Philanthropy

○ 지역재단을 자산규모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미국과 캐나다의 지역재단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미시간지역과 이탈리아, 영국, 독일 순임

– 지역재단의 확산은 기부금의 꾸준한 증가로 평가 될 수 있음

<표 2-1> 국가별 총 유동자산과 보조금(2009년)

| | Total assets $000s | Total grants $000s |
|---|---|---|
| United States | 48,000,000 | 4,500,000 |
| Canada | 2,780,000 | 137,000 |
| Michigan | 1,949,750 | 125,510 |
| Italy | 274,796 | 29,694 |
| UK | 217,500 | 80,650 |
| Germany | 157,404 | 10,065 |
| Australia | 130,000 | 12,000 |
| Mexico | 28,000 | 14,000 |
| Poland | 20,740 | 509 |
| Spain | 7,028 | 747 |
| Singapore | 5,000 | 570 |
| Czech Rep | 4,315 | 204 |
| Kenya | 4,000 | 500 |
| New Zealand | 3,600 | 400 |
| South Africa | 3,000 | 1,500 |
| Russia | 1,761 | 364 |
| Belgium | 1,311 | 282 |
| Turkey | 1,250 | 40 |
| Philippines | 1,213 | 241 |
| Slovakia | 1,179 | 756 |
| Ceres | 900 | 759 |
| Latvia | 180 | 168 |
| Romania | 116 | 85 |
| Bulgaria | 82 | 652 |

참고 : http://www.wings-community-foundation-report.com/

○ 지역재단은 국제적인 연계가 활발하며,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재단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재단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재단을 지원하는 미국의 CMF과 영국의 CFN 같은 지역재단 지원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아름다운재단, 2007)

## 2. 지역재단의 역사

○ 최초의 지역재단이 설립된 미국은 20세기초 경제적 부흥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기관설립을 위한 지역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세법 개정 등으로 지역재단 설립이 활성화됨(아름다운재단, 2007)

- 미국은 1800년대 말부터 종교 혹은 인종별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체가 형성되었으며, 20세기 초 경제적 부흥에 따른 빈부격차가 발생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며, 이때 지역재단은 그러한 정부와 지역사회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
- 1914년 프레드릭 고프가 미국의 첫 번째 지역재단을 설립하였으며, 기업가(카네기, 모간 등)도 새로운 재단을 설립함
- 1969년 세법의 개정으로 지역재단이 public charity로서 지위를 획득하고, 세제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지역재단의 수는 급증하기 시작함
- 1970년 중반 "public support test"가 도입되어 지역재단은 기금 중의 1/3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하게 되면서 지역재단의 모금활동이 활발해짐
- 1980년대 연방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지원을 삭감하고 1990년대 경제부흥과 함께 지역재단이 성장하게 됨

○ 영국은 1980년 이후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재단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자선단체가 상호 보완하여 민간복지 요구에 부응함(아름다운재단, 2007)

- 1980년 이후 독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민주주의 확산으로 지역사회내 자치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복지를 지원하는 지역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정부는 지역재단 네트워크(Community Foundation Network, CFN)와 같은 지역재단 지원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재단의 확산 및 발전을 유도함
- 1991년 CFN이 찰스 스튜어트 모트 재단(Charles Stuart Mott Foundation)

과 공동으로 지역재단이 독자적인 자원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립기금 조성 프로그램'(Endowment program)을 시행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함

❍ 국내에서는 2006년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부천희망재단을 비롯한 안산희망재단, 남동이행복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등의 지역재단이 설립됨

- 그 외에도 지역재단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한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등이 설립되었으며, 지역재단을 표방하는 재단들이 생겨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지역재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인프라를 포함하여 운영에 많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3. 지역재단 지원조직

❍ 미국은 1975년 미시간 지역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재단 지원조직인 CMF(Council of Michigan Foundation)을 설립하였으며, 미시간 지역의 495개 이상의 지역재단과 회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음

- CMF에는 지역재단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을 실시, 지역재단에 대한 기술지원, 지역재단을 대표하여 정부와 법, 세제 등을 논의, 지역재단의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함

❍ 영국은 지역재단의 확산 및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도움으로 지역재단 네트워크(Community Foundation Network, CFN)가 설립되었으며, 65개 지역재단이 회원으로 가입함

- CFN은 지역재단 발전 욕구에 대응하며, 지역재단 운동을 위한 국가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전략적으로 설립지원계획의 발전모색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지역재단도서관을 조성, 각종 설립/운영

과 관련된 매뉴얼 등을 만들어 배포하며, 전국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역재단을 위해 국가로부터 자원과 기금을 지원받고, 이를 지역재단에 배분하며, 지역재단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정기회의 등을 개최함
- 국가를 상대로 지역재단과 관련된 법, 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재단의 자료,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CFN에서는 신생 지역재단 설립을 위해 3000 -5000 파운드(550만원 - 950만원)를 지원함

○ 유럽에서는 영국 지역재단의 움직임과 함께 유럽 7개 재단이 모인 재단 협의회로써 비영리 국제조직인 EFC(European Foundation Center)을 설립하여 유럽의 지역재단 확산과 지역재단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활동함(아름다운재단, 2007)

- 1990년대 EFC는 지역 사회의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CFI(Community Foundation Initiatives)를 구성하여 지역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
- EFC는 새로 설립되는 지역재단에 대한 자원 및 시설을 지원하고, 각 유럽 정부 및 EU와 법제, 세제와 관련된 논의, 지역재단에 대한 교육,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함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재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재단을 지원하는 조직이 없으며, 그 외에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2] 이 있음(2014, 최인수)

- 중간지원조직은 2014년 기준 광역 및 기초단위로 10개 시도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음(2014, 최인수)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일반주민에게는 접근방법이나 추진방법, 사업수행 중 전문적인 안내자 혹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후 중간지원센터 혹은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

- 중간지원조직은 지역공동체 사업 등에 있어서 주민, 행정, 전문가(시민단체, 마을활동가)의 상호협력 및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접수, 지역전문가 발굴,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를 위한 전반적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2014, 최인수)
-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은 중재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정체성의 부재, 낮은 사회적 인지도, 전문인력의 부족, 네트워크 협력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2013, 양용희)
- 특히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게 되고 자생력이 결여되어 점차 관료화되고 있는 실정임

## 제3절 한국형 지역재단에 대한 논의

### 1. 지역재단의 필요성

○ 20여년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공동체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에 의한 자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자치적 역량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활동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고민되고 있음

- 그러한 한계에는 지역사회 자체의 전문성 등 역량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한계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에 의존하는 단년도 예산지원체계의 한계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단년도 중심의 예산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공동체와 각종 지역사회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국내외 다양한 지역재단들의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역재단의 설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지역재단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역재단에 대한 인식이 그리 널리 확산되지 못한 실정임

– 지역재단은 사회적경제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유의미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기부문화 형성 및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지역재단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지역사회내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의 기반 마련
– 둘째, 지역사회내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유도 및 참여증진
– 셋째, 정부의 재정지원체계의 한계극복 및 지역사회내 매개자의 역할 수행
– 넷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내 다양한 단체들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다섯째, 지역사회내에 다양한 조직들간의 협력 및 신뢰 증진
– 여섯째,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내 조직 및 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 2. 한국형 지역재단의 정의

○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 마을활동가들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함

○ 그러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의 요소로는 최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및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재단 등의 역할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재정적부문과 역량강화부문, 행정적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재정적부문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내 각종 조직 및 단체가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대한 재정적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함
- 역량강화부문은 지역사회내 각 주체에 대한 인식제고를 비롯하여 교육·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커뮤니티 개발·연구, 마을전반에 대한 연구,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발굴, 지역전문가 발굴 등이 될 수 있음
- 행정적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매개자로써 상호협력과 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사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각 주체들에게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함

○ 따라서 한국형 지역재단은 전통적인 지역재단의 정의와 같이 재정적부문만을 포함하는 형태의 지역재단(I)과 다양한 지역공동체 및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등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부문과 역량강화부문, 행정적부문을 모두 포함한 형태의 지역재단(II)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표 2-2> 지역 활성화 및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요소

| 구분 | 내용 | 비고 |
|---|---|---|
| 재정적부문 | · 재정적지원 및 컨설팅<br>· 장기적 투융자 인내자본 운용<br>· 금융기관 대출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지역재단<br>정부재정지원<br>마을기금 |
| 역량강화부문 | · 인식제고 및 홍보<br>· 교육·학습<br>· 커뮤니티 개발·연구, 마을전반에 대한 연구,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발굴, 지역전문가 발굴 | 현장연구소(리빙랩 등)<br>커뮤니티개발주체 |
| 행정적부문 | · 정부 및 지자체와의 매개자<br>· 지역사회 다양한 사업(활동)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br>·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 중간지원조직 |

○ 또한 지역재단(I)과 지역재단(II)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특징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지원센터 등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지역의 현실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다음의 그림 2-7은 한국형 지역재단의 2가지 모형(안)을 보여주는 것으로 행정부, 입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다양한 조직 및 단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능한 재정조달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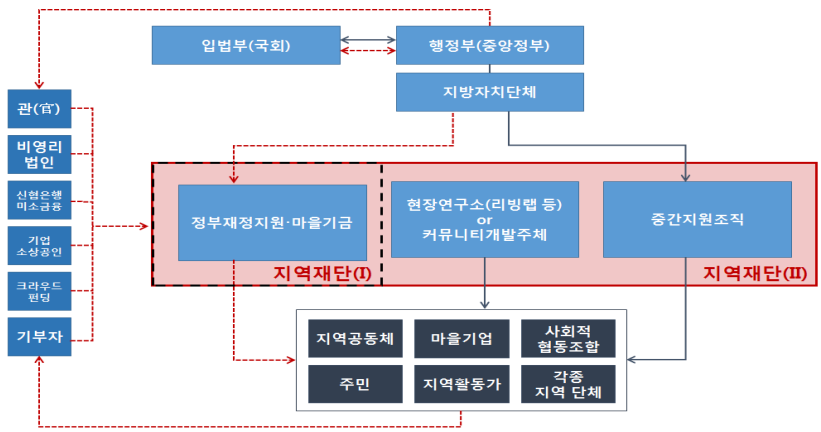


<그림 2-7> 한국형 지역재단 모형(안)

# 제3장
# 지역재단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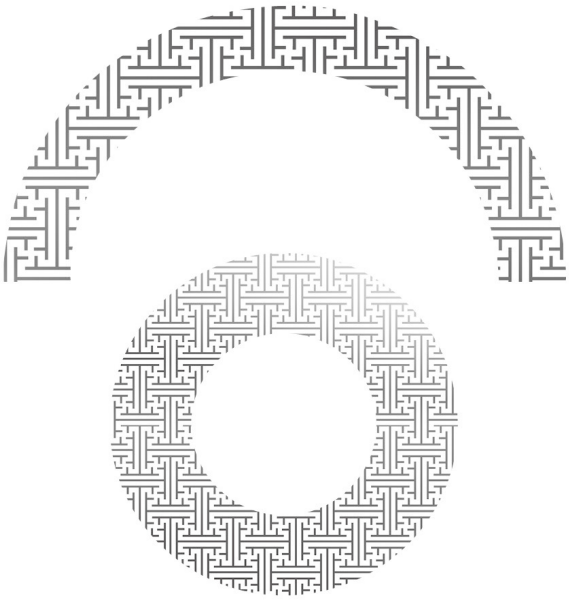

제1절 국외 지역재단

제2절 국내 지역재단

제3절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제4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제3장 지역재단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 제1절 국외 지역재단[3)]

### 1. 실리콘밸리 지역재단(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4)]

□ 개요

❍ 실리콘밸리 지역재단(Silicon Valley Community Foundation, SVCF)은 1954년 설립되었으며, 7.3억$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1,800개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 SVCF는 1964년 설립된 Peninsula 지역재단과 합병으로 2007년 1월에 재출연함

❍ 지역내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자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부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운영현황

❍ 실리콘밸리의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부과정을 간소화하여 기부자들이 지역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3) 국외 지역재단은 2장의 지역재단 국제적현황에서 살펴본 바를 참고하여 지역재단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재단 설립에 함의가 도출될 수 있는 5개 재단을 선정하였음
또한 국외 지역재단의 경우 재정현황 및 설립현황 등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여건을 고려하여 배제하였으며, 운영현황 및 사업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4) http://www.siliconvalleycf.org와 선진 지역재단 및 기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연수보고서(201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둘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기금을 투입
- 셋째, 지역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실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넷째, 지역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파트너 형성하고, 특히 지역재단 운영에 있어서 기부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와 지역주민 및 기부자와의 신뢰구축을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모색에 주력하고 있음

❍ 특히 지역이슈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내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지역재단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

- 기부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간관계 형성을 비롯한 기부자의 혜택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부자에 대해 파트너를 분류하고 맞춤형 관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현황

❍ 실리콘밸리 지역재단의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5가지의 주요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금을 형성하여 해당하는 사업에 배분하고 있음

- 또한 그 외에도 Donor-Advised Funds(기부자 조언기금)을 마련하여 기업 및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금조성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음

<표 3-1> 실리콘밸리 지역재단 주요사업

| 구분 | 내용 |
|---|---|
| Economic Security |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자산형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br>·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옹호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br>· 주택압류예방 상담 및 주거와 관련된 상담·법률 지원 |
| Education | · 저소득층 및 이민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수업, 방과후, 방학을 활용한 교육제공 교사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한 교사지원 프로그램 지원 |
| Immigrant Integration | · 지역내 이민자와 비이민자간의 문화차이 해소 프로그램 지원<br>·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시설 지원<br>· 이민자 대상 영어교육 지원 |
| Community Opportunity Fund | · 지역사회내 긴급사안, 자선적이고 지역혁신을 위한 이슈<br>· 지역사회내 혁신적인 변화 및 미션과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 지원(식량, 주거지, 노숙자 예방서비스 등) |
| Regional Planning | ·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역기금<br>· 대중교통 프로그램 지원 및 교통이동관련 시스템 지원 등 |

## 2. 샌프란시스코 지역재단(The San Francisco Foundation)[5)]

### □ 개요

❍ 샌프란시스코 지역재단(The San Francisco Foundation)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들의 리더십을 증진시키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변화를 위한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5) http://sff.org와 선진 지역재단 및 기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연수보고서(201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운영현황

❍ 전체 기금 12억달러 중 6천만달러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되며, 4천만달러는 기부자 조성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 기금을 투자하여 사업비를 계속 마련하고 있으며, 평균 16%의 수익을 창출
- 연간 7백만에서 9백만달러정도 모집하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 지역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지역내 NGO,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캠페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내 소규모 비영리 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대규모 펀딩, 자산기부 등을 지원하여 협력관계를 증진

❍ 사업절차 및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역내 단체로부터 신뢰와 인지도가 높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음

❍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자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기부자를 관리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 전문적인 기금을 운영, 우수한 투자관리, 편리성과 효율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부자들은 자산관리의 개념으로 기부를 하고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부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 기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조성되며, 기부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기부하도록 유도함
- Donors advice fund :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된 NGO에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이 있음
- Permanent endowed fund : 기부금이 매년 원하는 분야 또는 기관에 지원
- Supporting Organization : 재단과 연계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 지원
- Our impact fund : 여성·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
- Hope SF 캠페인 : 공공주택건설 지원

□ 사업현황

❍ 주요사업은 ① 지역프로그램, ② 특별 프로그램과 기금, ③ 민관협력 및 기금조성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④ 배분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음

<표 3-2> 샌프란시스코 지역재단 주요사업

| 구분 | 내용 |
|---|---|
| 지역프로그램 | · 문화·예술, 공동체 발전, 건강, 교육, 환경등 5개의 집중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자원 및 역량, 전문성을 지원하고 협력 |
| 특별 프로그램 및 기금 | ·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경기침체, 재해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
| 민관협력 및 기금조성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 · 노동자펀드 콜라보레이션, 희망SF캠페인, 시민참여기금 |
| 배분프로그램 | · 지역프로그램(5개 분야)에 대한 배분사업 실시<br>· 프로젝트, 역량강화, 지역운영지원에 대한 자원제공<br>· 지역사회외부, 재단의 주요사업 외 사업, 종교활동, 개인직접 지원, 컨퍼런스, 일회성이벤트에는 배분금지 |

## 3. 캘리포니아 지역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6]

□ 개요

❍ 캘리포니아 지역재단은 1915년 설립되었으며, 자산규모는 12억달러이고 예술, 교육, 의료, 주택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6) http://calfund.org/와 선진 지역재단 및 기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연수보고서(201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운영현황

❍ 캘리포니아 지역재단은 지역특성[7]을 고려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이슈를 발굴·선정하여 기금을 조성, 사업화하고 있음

– 그러한 지역의 특수성은 영화배우 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기부자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재단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그로 인해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음

❍ 기부금으로 대규모 강당을 지어, 지역내 소규모 단체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증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지역재단은 효과적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기부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음

– 목표 및 기부금액 설정(관심사업 확인, 자산상황 확인, 성공적인 기부 정의) → 비영리단체 탐색(비영리단체 리서치, 지원단체 설정, 기부기회 확인) → 기부계획 수립(기부금액 설정, 기부시간계획설정, 기부확약) → 기부실행(비영리단체에 기부, 기부효과측정, 펀드자금 증액)

❍ 기금은 기부자조언펀드, 개인재단대체펀드, LA 미래펀드, 현장지원펀드, 장학금펀드, 제한적 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기금에서 연간 10-20%를 예술, 교육, 의료, 주거, 시민참여, 청소년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 사업현황

❍ 주요사업은 ① Building a Lifetime of option and opportunities for Men(BLOOM), ② CCF Fellowship for Visual Artists, ③ immigrant

7) 소득수준이 낮고 이민자들이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율이 60%미만에 그치는 등 사회적 문제 고려

integration initiative, ④ Los Angeles Preschool Advocacy Initiative, ⑤ Preparing Achievers for Tomorrow 등임

<표 3-3> 캘리포니아 지역재단 주요사업

| 구분 | 내용 |
|---|---|
| Building a Lifetime of option and opportunities for Men | · 재단과 기업, 지역 NGO단체가 협력하여 흑은 남성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직업기회를 제공하여 수감되는 수를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 |
| CCF Fellowship for Visual Artists | · 지역내 신진 예술가 등을 지원 |
| immigrant integration initiative | · 2009년부터 지역위원회, 시민단체, 기업, 교육, 법/노동, NGO등이 협력하여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 운영 |
| Los Angeles Preschool Advocacy Initiative | ·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초기교육을 제공 |
| Preparing Achievers for Tomorrow | · NGO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가구 아동들에게 음악, 스포츠, 사회체육 등을 지원 |

## 4. 마린 지역재단(Marin Community Foundation)[8)]

□ 개요

❍ 마린 지역재단은 1986년 Marin County 거주자인 Leonard와 Beryl H. Buck에 자산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350명이 넘는 개인, 가족, 기업, 지역단체들의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기부자(지역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Marin County 내 지역문제에 대해 기부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을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단

8) https://www.marincf.org/와 선진 지역재단 및 기관 운영사례 벤치마킹 연수보고서(201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 수행
- 주요 관심사는 교육격차해소, 빈곤의 악순환 단절, 주택 관련임

❍ 지역내 문화 및 예술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다양성을 인정,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기금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운영현황

❍ 마린 지역재단의 운영방안은 크게 ① Grants and Loans, ② Major Projects, ③ Family and Community Funds 로 구분됨
- Grants and Loans : 지역내 NGO 및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재량기금을 조성하고, 대출기금(MCF Loan Fund)을 조성하여 NGO단체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줄 수 있는 기금 운영
- Major Projects : 노인, 교육, 알콜 관련 문제를 지역의 주요 이슈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연간보고서를 발간
- Family and Community Funds : 350개 이상의 개인, 가족, NGO단체, 기업의 자선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기부자조언기금, 장학기금, 자유기금 등임

❍ 개인기부자의 펀드(FuND)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으로 활용하여 지역내 프로그램 및 NGO를 지원하고 있음
- 기부자는 세금혜택 및 펀드운영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을 기반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모금에 대한 부담이 적음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부자 관리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함으로 지속적 기부자의 중요성 인식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 기부자욕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부자가 기부기획에 참여하고, 기부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기부자가 기부 전과정에 참여시켜 지역내 자선적 이슈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부자는 세금혜택으로 얻은 이익을 자발적으로 다시

기부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지역사회의 변화 및 재단의 역할·효과를 연구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역 내 이슈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지원함

### □ 사업현황

❍ 주요사업은 ① Closing the Education Achievement Gap, ② Ending the Cycle of Poverty, ③ Increasing Affordable Housing등이 있음

<표 3-4> 마린 지역재단 주요사업

| 구분 | 내용 |
|---|---|
| Closing the Education Achievement Gap | · 저소득층 가정 및 이민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br>· 부모참여프로그램, 학습시간 증대, 조기교육에 대한 지원<br>·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자 하는 청소년 지원<br>· 공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켜 저소득 및 이민가정 청소년들의 교육성과 개선 지원 |
| Ending the Cycle of Poverty | ·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키기 위한 사업<br>· 저소득층 수입증대<br>· 저소득 가구 및 개인 자산형성<br>· 자산개발 및 수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공공기반 건립 |
| Increasing Affordable Housing | ·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br>· 알맞은 가격의 주택 지역설정 변경 및 적절한 수준의 주택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확대<br>· 임대 및 자가주택의 가격주택의 적정화<br>· 홈리스 위험군에 있는 주민들 지원 |

❍ 그 외에 Arts and Culture, Equity in Legal Protection, Improving Community Health, Integration of Immigrants, Social Justice and Interfaith Understanding, Successful Aging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5. 클리블랜드 지역재단(Cleveland Foundation)[9]

### □ 개요

❍ 미국의 클리블랜드 지역재단은 세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 1914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기준 총자산이 2.2억 달러로써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지역재단임

– 클리블랜드 신탁회사의 은행원인 프레드릭 고프(Fredrick Harris Goff)가 지역사회에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을 기반으로 2007년 클리블랜드 지역재단으로 발전하였음

❍ 클리블랜드 지역재단은 지금과 미래세대의 모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기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운영현황

❍ 클리블랜드 지역재단에는 개인, 가족, 단체 및 기업을 대표하는 800개 이상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영리단체에 기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며, 영리조직, 중소기업, 기부캠페인, 연간모금 및 회원 운영을 위한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기금의 일부는 정부기관에 의해 만들어 지며, 기금은 그레이터 클리브랜드 프로젝트와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 등에 사용됨

9) https://www.clevelandfoundation.org

– 재단에서 고용된 직원수는 79명임

□ 사업현황

❍ 재단은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영역을 5개 영역(① 경제발전과 변화, ② 공공학교 개선 및 발전, ③ 유아 및 청소년 지원, ④ 지역과 주택, ⑤ 예술과 문화향상)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2/3을 지원하며, 기금의 1/3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 사용됨

– 사업의 유형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 기금수집, 컨설팅서비스, Matching/challenge 지원, 프로그램 관련 투자 및 대출, 장학금, 기술적 지원, Capital campaigns 등임

□ 재정현황

❍ 클리블랜드 2014년 기준 자산총계는 2.17 억 달러이며, 공인된 보조금 횟수는 3,826개, 기존자산은 98백만 달러이며, 기부금 43백만 달러, 지출은 13.2백만 달러임

## 제2절 국내 지역재단[10]

### 1. 개요

❍ 국내 지역재단은 2006년 설립된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을 시작으로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등이 있음

10)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http://www.hopefund.or.kr, 부천희망재단 : http://www.hopefoundation.or.kr/, 성남이로운재단 : http://www.goodfund.or.kr/, 안산희망재단 : www.ashf.or.kr, 인천남동이로운재단 : http://blog.naver.com/happy_found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은 지역사회주도로 논의되어 설립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은 지자체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음

<표 3-5> 국내 지역재단 설립개요

| 구분 |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이로운재단 | 안산희망재단 |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
|---|---|---|---|---|---|
| 설립주체 | 지역사회 | 지역사회 | 지역사회 | 지역사회 | 지역사회+지자체 |
| 법인형태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 유형 | 민설민영 | 민설민영 | 민설민영 | 민설민영 | 민관협치 |
| 설립일 | 2006년 8월 | 2011년 3월 | 2012년 4월 | 2013년 5월 | 2013년 10월 |

❍ 국내 지역재단은 행정의 도움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재단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은 없는 실정임

## 2. 설립현황

❍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8월에 설립되었음(풀뿌리희망재단 연간보고서 2015)
- 천안의 복지활동가 윤혜란님이 2005년 막사이사이상 '떠오르는 지도자'부문을 수상하고 받은 5만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됨

❍ 부천희망재단은 부천 지역사회에 창의적인 나눔 문화와 더불어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 공익적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재단 논의를 시작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음

❍ 성남이로운재단은 성남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의 생활화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삶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에 설립되었음

– 장건 준비위원장이 성남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몇 분에게 기부와 나눔을 위한 지역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논의하면서 설립됨

❍ 안산희망재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5월 설립됨

– 안산지역 기업, 시민단체,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으로 기부와 나눔을 통해 안산지역의 희망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설립됨

❍ 남동이행복한재단은 주민과 기업의 참여로 나눔과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7월에 설립됨

– 지자체의 간접 지원을 받아 시민사회단체가 설립한 하이브리드형(hybridtype) 지역재단으로, 창립준비단계에서 부터 기초지자체인 남동구가 논의를 주도함

<표 3-6> 국내 지역재단 설립개요

| 구분 |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이로운재단 | 안산희망재단 |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
|---|---|---|---|---|---|
| 설립주체 | 지역사회 | 지역사회 | 지역사회 | 지역사회 | 지역사회+지자체 |
| 법인형태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사단법인 |
| 유형 | 민설민영 | 민설민영 | 민설민영 | 민설민영 | 민설민영 |
| 설립절차 | 복자활동가의 5만 달러 기부를 포함하여 600여명의 기금으로 출연 | 40명 설립준비위원회 결성하고 기금 마련 | 지역재단 설립준비위원회(4명) 구성 | 창립 공론화 및 준비위원회 결성 | 지자체의 간접지원을 받아 시민사회단체가 설립한 하이브리드형 |
| 설립 자본금 | 3억 4천만원 (3억 출연, 4천만원 운영비) | 5억원 | 1억 5천만원 | - | - |
| 설립시 행정지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지자체의 간접지원 |
| 설립기간 | 5개월 | 2년 | 1년 | 1년 | 1년 |
| 설립일 | 2006년 8월 | 2011년 3월 | 2012년 4월 | 2013년 5월 | 2013년 10월 |
| 발기인 | 143명 | 90명 | 33명 | | |

## 3. 재정현황[11)]

❍ 5개 지역재단은 자산규모로 살펴볼 때 부천희망재단의 자산 규모가 가장 높

11)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http://www.hopefund.or.kr 재무상태표 및 2015년 결산보고. 2015년 12월 31일 기준, 성남이로운재단 : http://www.goodfund.or.kr/ 2014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4 재정(운영성과표, 재무재표) 및 감사보고서, 안산희망재단 : www.ashf.or.kr, 2014년 안산희망재단 결산 법인보고, 인천남동이로운재단 : http://blog.naver.com/happy_found, 2014년 수입·지출 내역을 참고하였음

았으며, 수입지출 규모 역시 부천희망재단이 10억원대로 가장 높고, 안산희망재단,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순임

<표 3-7> 국내 지역재단 수입현황

| 구분 | 천안풀뿌리 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이로운 재단 | 안산희망재단 | 인천남동 이행복한재단 |
|---|---|---|---|---|---|
| 설립자본금 | 3억 4,000만원 | 5억 | 1억 5,000만원 | - | - |
| 자산 | 4억 3,047만원 | 5억 7,051만원 | 6,828만원 | - | - |
| 총 수입 | 3억 2,885만원 | 10억 6,882만원 | 1억 7,471만원 | 6억 4,353만원 | 2억 8,881만원 |
| 총 지출 | 3억 2,885만원 | 10억 6,882만원 | 1억 7,006만원 | 6억 6,994만원 | 2억 8,888만원 |

※ 본 수입·지출 내역은 각 지역재단 홈페이지의 최근년도 연간보고서 혹은 결산보고자료,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였으며, 항목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실제 데이터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안산희망재단의 경우 기금운영자산과 재단운영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석 과정에서 두 부분을 통합함
※ 자산의 경우 부채와 순자산의 총계임

❍ 수입항목은 재산수입과 재단회비, 재단운영을 위한 후원금, 후원금, 기부보험, 사업외 수입, 기타, 이월금으로 구분되며, 수입의 대부분은 기부와 기금모집, 모금행사 등을 통한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 후원금의 비중은 성남이로운재단이 95.1%(1억 6,614만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동이행복한재단이 75.3%(2억1,753만원),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이 71.2%(2억 3,403만원), 부천희망재단이 60.6%(6억 4,792만원), 안산희망재단이 45.9%(2억 9,507만원)순임
– 그러나 실제 후원금 금액은 부천희망재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안산희망재단의 경우 이월금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산희망재단과 남동이행복한재단, 부천희망재단은 재단운영을 위한 후원금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음
– 또한 남동이행복한재단은 수입중 재단회비의 비중이 4.7%(1,37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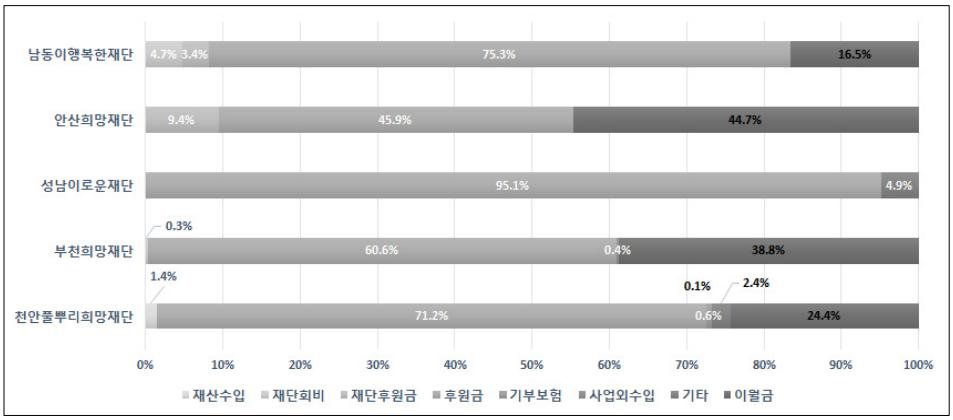


<그림 3-1> 국내 지역재단 수입현황

❍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원금은 정기·비정기 기부 및 기금과 현물기부, 모금행사를 통한 기금모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기·비정기 기부 및 기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천안풀뿌리희망재단과 남동이행복한재단은 모금행사를 통해 후원금을 마련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산희망재단의 경우 현물기부를 통해서도 후원금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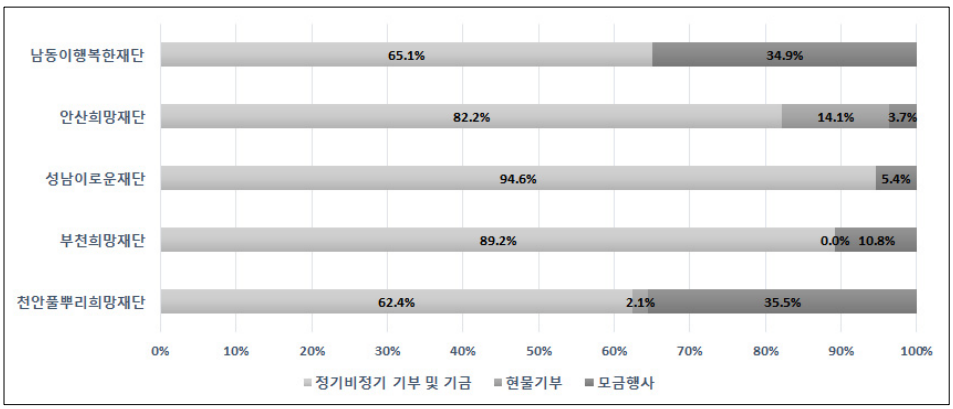


<그림 3-2> 국내 지역재단 후원금현황

❍ 5개 지역재단의 지출항목은 인건비와 운영비, 모금행사사업비, 배분사업비, 홍보사업비, 조직육성비, 교육사업비, 기타, 이월금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건비의 비중은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이 29.2%(9,589만원)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성남이로운재단은 21.4%(3,634만원), 남동이행복한재단은 11.3%(3,268만원), 부천희망재단은 9.7%(1억388만원), 안산희망재단은 6.4%(4,315만원)순임

– 운영비의 비중은 성남이로운재단이 5.3%(906만원), 부천희망재단이 3.2%(3,427만원), 천안풀뿌리희망재단 3.1%(1,025만원), 남동이행복한재단 2.3%(672만원), 안산희망재단이 2.2%(1,466만원)순임

– 배분사업비의 비중은 안산희망재단이 71.5%(4억7,902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성남이로운재단이 59.7%(1억159만원), 부천희망재단(2억9,515만원), 남동이행복한재단 26.%(7,513만원), 천안풀뿌리희망재단 23.6%(7,774만원)순임

– 특히 남동이행복한재단의 경우 지출의 43.4%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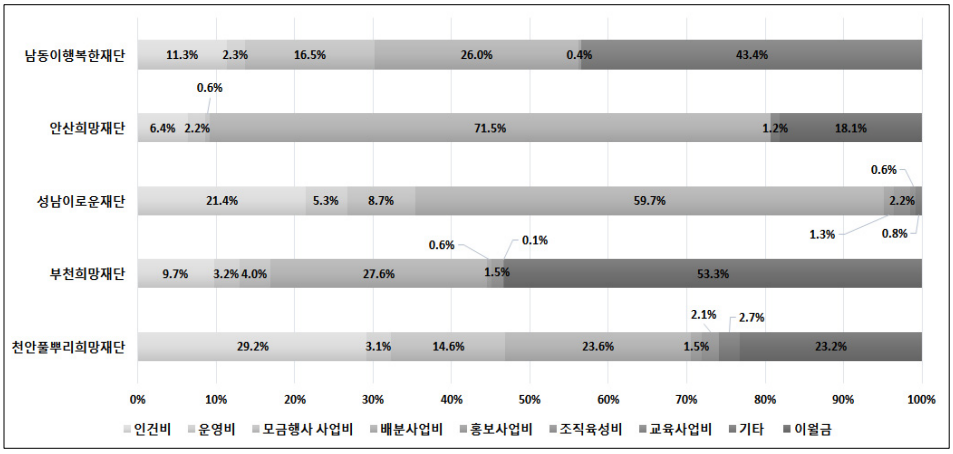


<그림 3-3> 국내 지역재단 지출현황

## 4. 운영현황

❍ 지역재단의 이사수는 11명에서 15명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직원수는 부천희망재단은 5명,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은 4명, 성남이로운재단은 2명순임

<표 3-8> 국내 지역재단 운영 현황

| 구분 | 천안풀뿌리 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이로운재단 | 안산희망재단 | 인천남동이 행복한재단 |
|---|---|---|---|---|---|
| 이사수 | 11 | 10 | 14 | 12 | - |
| 고용직원수 (사무국) | 4 | 5 | 2 | - | - |
| 연간인건비 | 2,397만원 | 2,077만원 | 1,817만원 | - | - |

❍ 지역재단의 연간인건비를 고용직원수로 계산하면 1인당 인건비는 평균 2,097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희망재단은 2,397만원, 부천희망재단은 2,077만원, 성남이로운재단 1,817만원순임

## 5. 사업현황

❍ 5개 지역재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크게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모금사업은 정기·비정기 기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기부와, 특정한 기금, 그리고 특별기부, 재능기부, 프로젝트기부, 모금행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의 주요 모금사업은 1% 희망나눔기부, 기금기부, 특별

한 기부, 프로젝트기부, 거리공연모금기부, 모금행사참여기부 등이 있음

- 부천희망재단의 주요 모금사업으로는 정기기부와 일시기부, 유산기부, 사업자기부, 첫손님가게, 월급끝전모으기 기부, 맞춤형 기부협약, 사회공헌 MOU, 재능기부 등이 있음
- 성남이로운재단의 주요 모금사업은 1%나눔기부 및 나눔가게, 개인과 가족, 단체, 기업별 맞춤형 기부 컨설팅, 정기기부, 일시기부, 재능기부 등임
- 안산희망재단의 주요 모금사업은 희망1004기금과 기부자 특별목적기금(지정기탁), 공익기금, 재단후원 등이 있음
- 남동이행복한재단의 주요 모금사업으로는 일일찻집, 열린음악회, 1%행복나눔, 디딤장학금, 공익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사랑나눔동호회, 노숙인쉼터 지원지금 등이 있음

<표 3-9> 국내 지역재단 모금사업 현황

| 구분 |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이로운재단 | 안산희망재단 |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
|---|---|---|---|---|---|
| 기부 | 정기·비정기기부<br>유산기부<br>1%나눔기부<br>희망나눔가게<br>각종 동아리, 학생회, 학교 기부 | 정기·비정기기부<br>유산기부<br>사업자기부<br>첫손님가게기부<br>월급끝전기부 | 정기·비정기기부<br>일시기부<br>나눔가게<br>1%나눔기부 | 정기·비정기기부 | 정기·비정기기부<br>1%행복나눔 |
| 기금기부 | 특정기금 | 특정기금 | 특정기금 | 특정기금 | 특정기금 |
| 특별기부 | 급여1%<br>마라톤완주 등 | 맞춤형 기부협약<br>사회공헌 MOU | 기부컨설팅 | - | - |
| 재능기부 | - | 재능기부 | 재능기부 | - | - |
| 모금행사 및 캠페인 | 기부골프대회<br>나눔만찬회<br>거리공연 | 기부천사의 날 | - | - | 일일찻집,<br>열린음악회 |

※ 본 모금사업 현황은 각 지역재단 홈페이지와 지역재단에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실제 모금사업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배분사업은 공익단체조직지원과 공익활동가지원, 청소년·아동지원, 어르신·사회적약자지원, 환우지원, 지역사업, 지구촌사업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의 주요 배분사업은 신규공익단체 조직을 지원하고 아동그룹홈 여가 지원, 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 지원, 미래세대 희망교육 지원, 지구촌 나눔지원, 결식아동 조식지원 등임
- 부천희망재단은 공익과 대안찾기, 다음세대를 키우고 나눔문화 뿌리내리기, 소외와 차별 치유하기, 부천시민을 위한 더 나은 부천만들기로 구분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성남이로운재단은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아동·청소년·미래세대 지원사업, 빈곤과 차별,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재능기부 컨설팅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안산희망재단의 주요 배분사업은 교육복지 멘토링 지원사업, 고려인 동포 자녀 공부방 마련 지원사업, 이주여성 쉼터 마련 지원사업, 희망1004 저금통 보급사업,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희귀 난치병 환우를 위한 희망 1004나눔 콘서트 지원사업 등이 있음
- 남동이행복한재단의 주요 배분사업은 희망품앗이, 따뜻한 겨울나기, 노숙인 쉼터, 어린이날 지원, 장학금, 결식아동 지원, 긴급지원, 마을만들기 지원, 저금통제작 등이 있음

<표 3-10> 국내 지역재단 배분사업 현황

| 구분 |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이로운재단 | 안산희망재단 |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
|---|---|---|---|---|---|
| 공익단체조직지원 | 설립지원, 여가지원 | 해외연수지원, 힐링캠프지원, 지역인재 인큐베이팅 및 지원 | 공익활동지원, 재능기부컨설팅 | - | 마을만들기 지원 |
| 공익활동가지원 | 여가지원, 역량강화지원, 크라우드펀딩매칭 지원 | 해외연수지원 힐링캠프지원 지역인재 인큐베이팅및지원 | 공익활동지원 | - | - |
| 청소년·아동지원 | 장학금지원, 자격증교육비지원, 결식아동조식지원 | 저소득대상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미용지원, 학습과 나눔 | 아동청소년 미래세대지원 |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교육복지 멘토링 지원사업 | 어린이날 지원, 장학금, 결식아동 지원 |
| 어르신 및사회적약자지원 | 한부모가족 공동체 모임 및 사업지원 | 1사1경로당 희망리어카 | 사회적약자, 소수자 지원 | 이주여성 쉼터 마련 지원 고려인 동포자녀 공부방마련지원 | 희망품앗이 따뜻한 겨울나기 노숙인 쉼터 긴급지원 |
| 환우지원 | - | 이른둥이·싱글맘 영유아 긴급의료비 지원, 장기투석어린이등 의료비 지원 | 사회적약자, 소수자 지원 | 희귀 난치병 환우를 위한 희망 1004나눔 콘서트 지원사업 | - |
| 지역사업 | 기부문화활동 조사연구 | 도시녹화사업 기부화단조성 | - | 희망1004 저금통 보급사업 | 저금통 |
| 지구촌사업 | 지구촌나눔지원 | - | - | - | - |

※ 본 모금사업 현황은 각 지역재단 홈페이지와 지역재단에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실제 배분사업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5개 지역재단의 사업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편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는 기부자의 기부를 고취시키고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공익단체조직 포함)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3절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 1. 개요

❍ 지역재단의 개념과 기준에 비추어 지역재단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역재단과 유사한 재단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명확한 성격규정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처럼 지역재단 관련하여 유사재단은 설립주체에 따라 지자체주도와 시민단체주도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른 운영주체에 따라 관설관영, 관설민, 민설민영, 민관협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사례는 지자체 주도(관설민영)로 설립된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살펴보고, 시민단체 주도(민설민영)로 설립된 생명나눔재단을 분석함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관설관영의 지역재단 유사사례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사무실운영비 및 경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운영비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지자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간섭에서 독립적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되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조직이므로 관설민영이라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표 3-11>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설립개요

| 구분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설립주체 | 지자체주도 | 지자체주도 | 민간 주도 |
| 법인형태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 설립유형 | 관설민영 | 관설민영 | 민설민영 |
| 공익사업유형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의료복지 |
| 설립일 | 2004년 7월 | 2005년 3월 | 2004년 9월 |

## 2. 설립현황[12)]

❍ 동작복지재단은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 7월에 설립되었음

– 2003년 3월 구의회 복지재단 설립건의를 시작으로 9월 동작복지재단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2004년 4월 발기인 총회를 거쳐 7월에 설립

–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로부터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설립되었으며,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따라 관설관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동작복지재단은 지역사회의 의제보다는 지역복지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사

12) 동작복지재단 : http://www.smile-d.or.kr/, 양천사랑복지재단 : http://www.eloveyc.or.kr/, 생명나눔재단 : http://www.lifeshare.co.kr/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기부금 조성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내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양천사랑과 행복나눔 사업을 통해 복지향상에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설립되었음

- 2005년 3월 민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및 조례를 공표하고 설립함
- 재단법인 형태로 지자체로부터 2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설립되었으며,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지자체의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따라 관설관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지역사회의 의제보다는 지역복지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기부금 조성을 통해 복지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생명나눔재단은 시민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역재단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삶의 가치를 높이고 공익적 문화를 실현시켜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4년 9월 설립되었음

- 2000년 지역에서 소아암 환자를 돕는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발전하여 제대로된 지원을 위해 지역재단이 논의됨
- 이에 2004년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인, 법조인, 교사, 학부모, 의료인, 언론인 등 지역인사 10인을 중심으로 재단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155인이 참여하여 설립함
-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의지가 반영되어 설립되었으며, 주로 경남지역의 빈곤아동, 장애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3-12>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설립개요

| 구분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설립주체 | 지자체주도 | 지자체주도 | 민간 주도 |
| 법인형태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재단법인 |
| 설립유형 | 관설관영 | 관설관영 | 민설민영 |
| 공익사업유형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
| 설립절차 | 2003년3월구의회 복지재단설립건의를 시작으로 9월동작복지재단 계획을 수립, 11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제672호), 2004년4월 총회, 7월 설립 |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 및 조례공표 보건복지부(설립허가) | 2004년 7월 생명나눔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이사회구성 및 창립총회를 실시하여 설립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
| 설립 자본금 | 20억원 | 20억원 | - |
| 설립시 행정지원 | 출연금 + 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 출연금 + 운영비,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 없음 |
| 설립기간 | 1년 4개월 | - | - |
| 설립일 | 2004년 7월 | 2005년 3월 | 2004년 9월 |
| 발기인 | - | 11명 | - |

## 3. 재정현황[13)]

❍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자산규모는 각 37억원과 26억원임
- 국내 지역재단(민설민영, 민관협치)의 자산규모(평균 3-5억원)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된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자산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국내의 지역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고려할 때 일반인, 시민단체 등의 주도만으로 설립되는 지역재단의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표 3-13>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

| 구분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설립자본금 | 20억원 | 20억원 | - |
| 자산 | 37억9,878만원 | 26억3,016만원 | - |
| 총 수입 | 11억231만원 | 20억4,354만원 | 7억2,997만원 |
| 총 지출 | 11억9,226만원 | 15억7,443만원 | 7억2,997만원 |

※ 본 수입·지출 내역은 각 재단 홈페이지의 최근년도 연간보고서 혹은 결산보고자료,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였으며, 항목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실제 데이터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자산의 경우 부채와 순자산의 총계임

❍ 한편 수입항목을 살펴보면, 재산수입과 보조금, 출연금수입, 사업외수입, 이월금, 기타로 구분되며 후원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후원금의 비중은 동작복지재단의 경우 82%(9억 39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사랑복지재단은 69.6%(14억 2,285만원), 생명나눔재단은 38.6%(2억 8,157만원)순임

13) 동작복지재단 : http://www.smile-d.or.kr/.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양천사랑복지재단 : http://www.eloveyc.or.kr/,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공시, 생명나눔재단 : http://www.lifeshare.co.kr/,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2015.12) 을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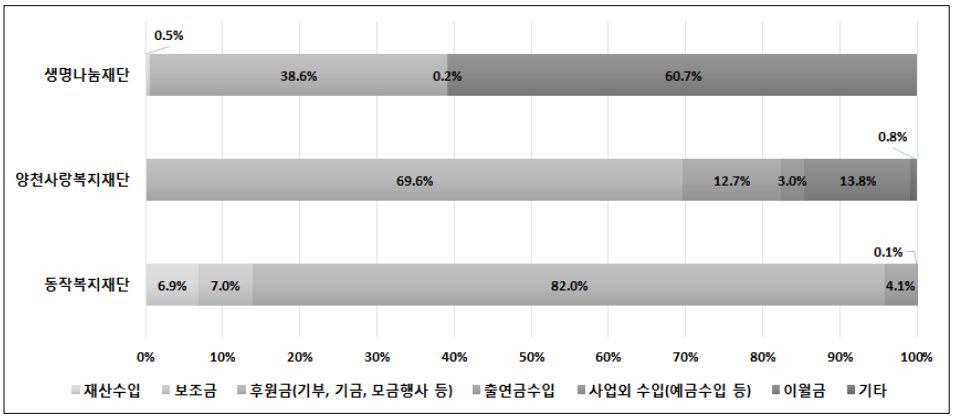


<그림 3-4>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수입현황

❍ 지출항목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으로 구분되며 전반적으로 사업비 지출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건비의 비중은 생명나눔재단이 15.3%(1억 1,14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12.8%(2억 230만원), 동작복지재단이 7%(8,322만원)순임

– 사업비는 동작복지재단이 91.3%(10억 8881만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85.1%(13억3912만원), 생명나눔재단이 80.2%(5억 8549만원)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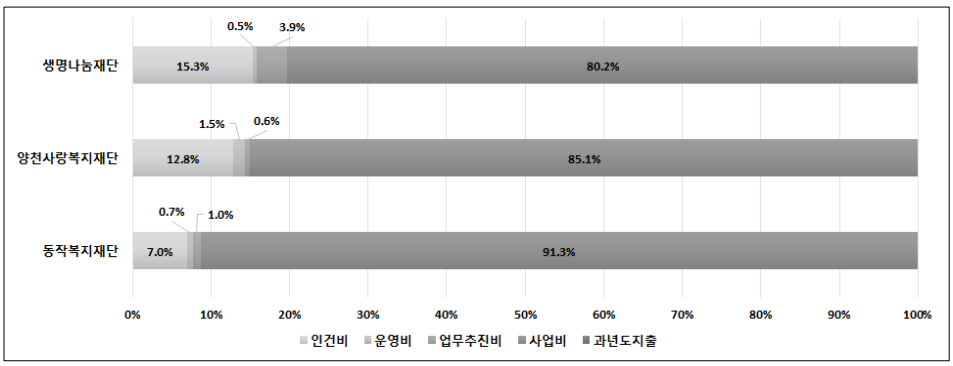


<그림 3-5>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지출현황

## 4. 운영현황

❍ 각 재단들의 이사회 구성은 대부분 15명 내외로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사무국 등의 고용직원수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5명, 생명나눔재단이 4명, 동작복지재단이 2명순임

–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대단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당연직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운영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3-14>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운영현황

| 구분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이사수 | 15 | 14 | 15 |
| 고용직원수 | 2 | 5 | 4 |
| 연간인건비 | 4,161만원/인 | 4,046만원/인 | 2,787만원/인 |

❍ 각 재단에 고용된 직원수를 보면, 재단의 연간 인건비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고용직원 1명당 연간인건비는 동작복지재단은 4,161만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은 4,046만원, 생명나눔재단은 2,787만원 순임

–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어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설립된 생명나눔재단 및 국내 지역재단(평균 연간인건비 1,404만원/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동작복지재단 및 양천사랑복지재단은 각 지자체 및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에 따라 기부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되고, 기부금 영수증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생명나눔재단은 설립초기 설립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무실은 건물주인이 기부한 공간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음

- 민설민영의 생명나눔재단이 정부나 기업의 도움없이 시민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재단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지자체에서 설립자금으로 20억원씩을 출연하고, 사무실 운영비 및 경상비 전액을 보조하고 있어 운영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지자체에서 출연한 재단은 담당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구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인 감독을 받고 있음

## 5. 사업현황

❍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의 사업은 모금사업, 배분사업, 운영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음

- 동작복지재단은 지역복지 중심으로 한 모금사업과 배분사업, 복지기반 구축지원사업, 시설전문화 기반조성사업 등을 전개하고 특히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구립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음
-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모금사업과 안정적인 복지자원 발굴사업, 배분사업,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양천구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구립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음
- 생명나눔재단은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소아암/난치병 아동지원 및 캠페인, 저소득층 아동지원, 장애아동지원, 저소득층 노인지원, 다문화가정지원), 기타사업(자원봉사 관리 및 운영, 헌혈증 및 골수 기증 등)을 전개하고 있음

<표 3-15> 국내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사업 현황

| 구분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모금사업 | 동작행복실현 모금사업 | 이웃사랑사업(기금모금), 안정적인 복지자원 발굴 | 정기기부, 일시기부, 특별기부(기념일, 문화공연, 유산 등), 캠페인, 물품기부 |
| 배분사업 | 기획사업, 저소득틈새가정 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 1사 1후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푸드마켓지원, 명절 보내기 사업 등 다수 | 소아암/난치병 아동지원 및 캠페인, 저소득층 아동지원, 장애아동지원, 저소득층 노인지원, 다문화가정지원 |
| 운영사업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어린이집 9개소, 구립청소년 독서실 4개소,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 |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양천구해누리푸드마켓, 구립곰달래 어린이집, 구립한별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5개소 등 수탁운영 및 운영효율화 | - |
| 기타사업 | 복지기반구축지원사업, 시설전문화 기반조성사업 | 지역사랑사업,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 자원봉사 관리 및 운영, 헌혈증 및 골수 기증 |

※ 본 사업 현황은 각 재단 홈페이지와 재단에서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실제 사업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제4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1. 설립

❍ 지역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단(양천사랑복지재단, 동작복지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사회가 설립의 주체가 되어 설립되었으며, 행정적 지원은 없었음

– 이러한 지역사회를 주체로 한 지역재단의 설립은 지역재단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될 수 있으나, 재단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근근히 운영되는 여건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의 간접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민관협치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설립자본금은 지역사회가 설립의 주체로 설립된 지역재단의 경우 1억5천만원에서 5억원 사이로 매우 낮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설립된 복지재단의 경우 20억원으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자산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지역재단을 운영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지역재단 설립을 모색할 경우 설립자본금과 같은 운영자산은 최소 5-10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임

### 2. 운영

❍ 지역재단의 운영을 위한 이사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을 위한 고용직원수는 2명에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재단규모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한 고용직원수가 정해져야 할 것임

– 고용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된 복지재단의 경우 4천여만원이였으나,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설립된 재단의 경우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대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3-16> 국내 지역재단 운영 현황

| 구분 |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이로운재단 | 안산희망재단 |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이사수 | 11 | 10 | 14 | 12 | - | 15 | 14 | 15 |
| 고용직원수(사무국) | 4 | 5 | 2 | - | - | 2 | 5 | 4 |
|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 | 2,397만원 | 2,077만원 | 1,817만원 | - | - | 4,161만원 | 4,046만원 | 2,787만원 |

## 3. 사업

❍ 국내 지역재단과 지역재단 유사재단의 사업은 모금사업과 배분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양천사랑복지재단과 동작복지재단은 복지기반 구축사업, 시설전문화, 지자체시설 수탁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재단별 모금사업 유형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편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금 프로그램의 개발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가 모금사업 활성화에 주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역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모금행사, 음악회, 축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기부문화를 고취시켜야 할 것임

❍ 배분사업은 5개 지역재단의 경우 공익단체조직지원과 공익활동가지원, 청소년·아동지원, 어르신·사회적약자지원, 환우지원, 지역사업, 지구촌사업 등으로 구분됨

– 양천사랑복지재단과 동작복지재단은 복지분야에 한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나눔재단은 의료분야에 한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4. 재정

❍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지역재단의 경우 1억 5천만원에서 10억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된 복지재단의 경우 37억원과 26억원으로 비교적 높은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어, 주도한 설립주체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자산규모를 비롯한 수입·지출 규모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시민단체 주도하여 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는 용이하겠지만, 지역재단 운영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재정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수입항목은 지역재단의 결산보고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크게 보조금, 기금·기부, 회비, 기타(재산수입, 출연금수입, 이자수입 등), 이월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된 복지재단의 경우 높은 설립자본금을 통한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타 지역재단보다 사업운영이 활성화되고, 기금모집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사회 주도로 설립된 지역재단의 경우 기부금 모금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단 운영이 모금된 기금에 의존하는 한계로 인해 근근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금 모금을 위한 방안과 기부금 이외의 재정적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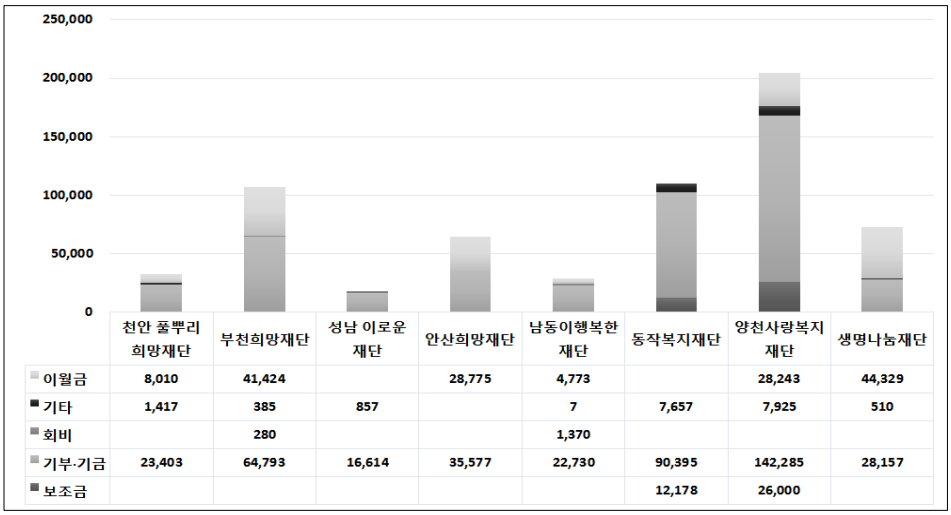


| |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 이로운 재단 | 안산희망재단 | 남동이행복한 재단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 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이월금 | 8,010 | 41,424 | | 28,775 | 4,773 | | 28,243 | 44,329 |
| 기타 | 1,417 | 385 | 857 | | 7 | 7,657 | 7,925 | 510 |
| 회비 | | 280 | | | 1,370 | | | |
| 기부·기금 | 23,403 | 64,793 | 16,614 | 35,577 | 22,730 | 90,395 | 142,285 | 28,157 |
| 보조금 | | | | | | 12,178 | 26,000 | |

<그림 3-6>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수입액,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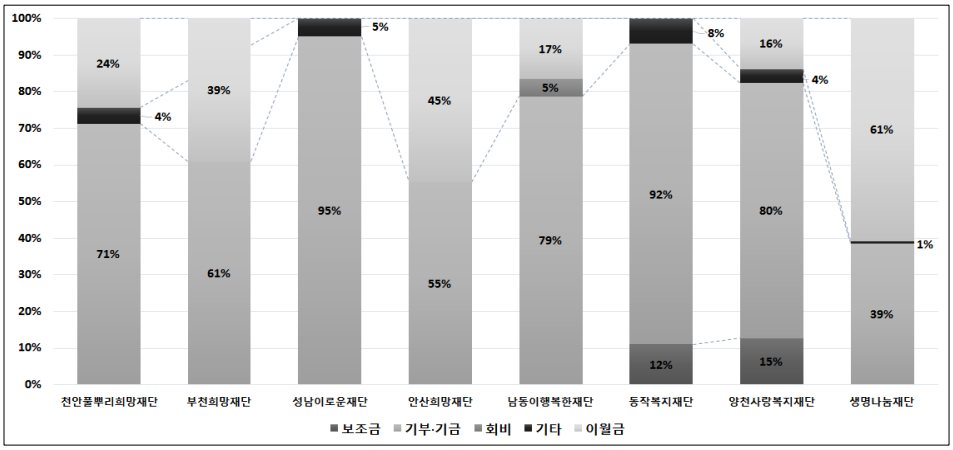


<그림 3-7>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수입비율)

❍ 지출항목은 크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 이월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작복지재단과 양천사랑복지재단은 타 재단에 비해 사업비가 월등하고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비 이외에는 비교적 균일한 양상을 보임

– 이는 보조금과 모금된 기금규모가 사업의 활성화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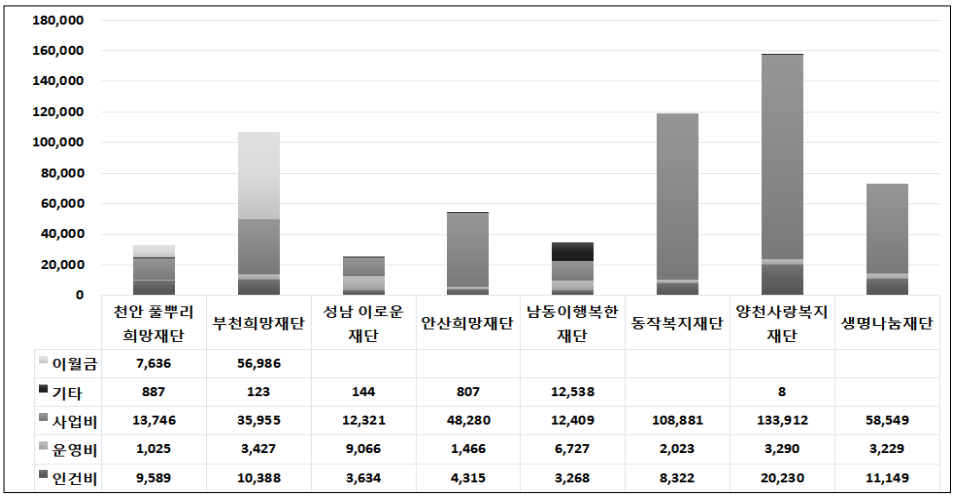


| | 천안 풀뿌리 희망재단 | 부천희망재단 | 성남 이로운 재단 | 안산희망재단 | 남동이행복한 재단 | 동작복지재단 | 양천사랑복지 재단 | 생명나눔재단 |
|---|---|---|---|---|---|---|---|---|
| 이월금 | 7,636 | 56,986 | | | | | | |
| 기타 | 887 | 123 | 144 | 807 | 12,538 | | 8 | |
| 사업비 | 13,746 | 35,955 | 12,321 | 48,280 | 12,409 | 108,881 | 133,912 | 58,549 |
| 운영비 | 1,025 | 3,427 | 9,066 | 1,466 | 6,727 | 2,023 | 3,290 | 3,229 |
| 인건비 | 9,589 | 10,388 | 3,634 | 4,315 | 3,268 | 8,322 | 20,230 | 11,149 |

<그림 3-8>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지출액,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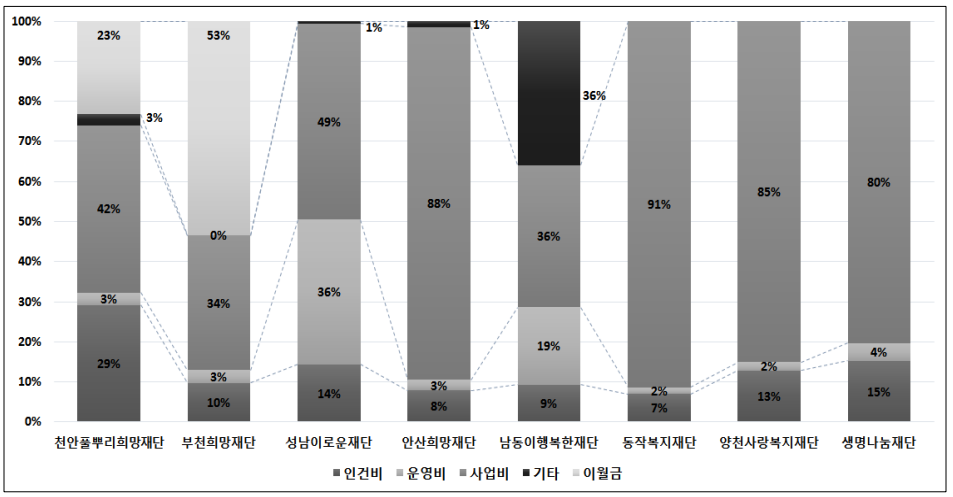


<그림 3-9> 지역재단 및 지역재단관련 유사재단 재정현황(지출비율)

## 5. 시사점

❍ 국내 지역재단의 사업유형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효율적인 지역자원을 동원하는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 재단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낮은 설립자본금과 재정적 지원 부재 및 기부에 대한 지역주민(국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일부 지역재단의 경우,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측면도 존재하며, 특히 지역사회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가 미흡하고,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기부자관리 서비스의 미비 등이 재단 운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보임

❍ 외국 지역재단의 경우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첫째,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기부자의 욕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부자가 기부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선정, 운영하고 있음
- 둘째, 지역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사회 NGO, 시민단체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기부를 촉진시키고 있음
- 셋째, 기부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맞춤형서비스로써 전문적인 상담지원(전문적인 자산관리사), 기부자의 기부 전과정 참여, 투자관리, 세제혜택 마련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부자는 신뢰를 구축하고 자산관리의 개념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음
- 넷째, 기부자 조언기금 운영, 기부자의 펀드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기부 및 모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다섯째, 이를 위해 사업절차 및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기부자 관리교육 등을 통해 기부자의 중요성 인식 및 지속적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 시민단체로부터 신뢰와 인지도를 높여 지역사회내 지역재단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

# 제4장
#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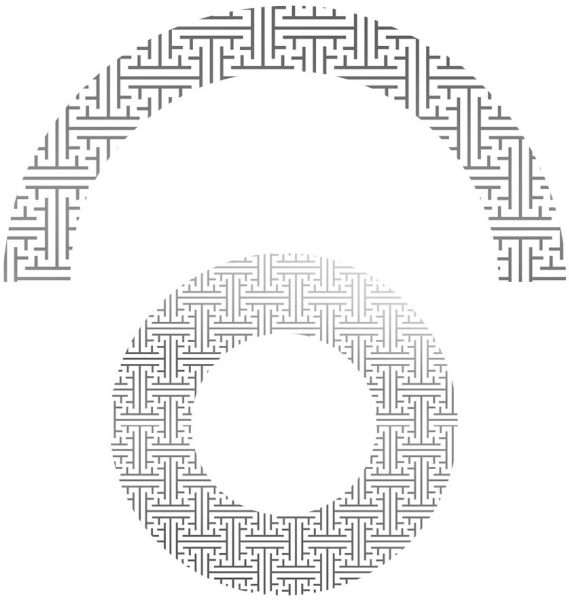

제1절 기본방향 및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안)

제2절 한국형 지역재단 설립
추진방안(안)

# 제4장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 제1절 기본방향 및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안)

### 1. 기본방향

□ 개념

❍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및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참여 등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민간법인[14]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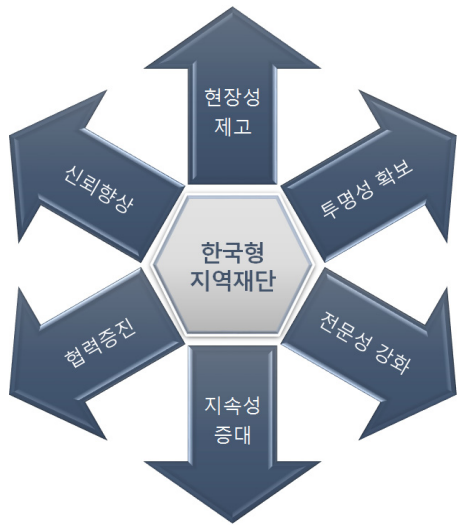


<그림 4-1> 한국형 지역재단 기본방향

14)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

❍ 한국형 지역재단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지역사회의 현장성을 제고해야 하며, 지역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② 전문성을 강화하고, ③ 투명성을 확보하여 ④ 신뢰를 향상함으로써 ⑤ 협력을 증진하여 ⑥ 지속성을 증대시켜야 함

- 지역사회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와 이슈가 되는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됨
- 단순한 기금모금에서 탈피하여 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자산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
- 지역재단의 목적과 활동, 기부현황 및 재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림으로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기부와 봉사를 이끌어 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고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부자 및 지역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위와 같은 요소들과 더불어 지역재단은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 발전의 기반인 지역재단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증대시켜 나가야 함

❍ 한편 한국형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법이 필요함

- 즉 불특정 다수에 의한 기부금 모집을 중심으로 지역재단이 성장한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 비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다양한 한계(규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시 지역공동체 재단 관련 조항을 통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또한 기부금에 의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현실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실질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마을 지원활동 등을 펼쳐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임

## 2. 지역재단 모델(안)

### □ 모델 유형 개요

❍ 지역재단 모델 유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재단의 설립·운영 주체 및 지역적 특징,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유형, 사업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첫째, 설립 및 운영 주체별로는 민설민영, 민관협치, 관설민영 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지역재단이 지역사회의 기부금 등을 모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재단 설립은 자칫 관의 과도한 권한행사 등으로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해치며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고, 정치적 상황에 따른 조직운영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성이 결여될 수 있음
- 민설민영의 경우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설립과 운영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초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며, 국내의 기부문화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초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한계를 가짐
- 한편 국내외 지역재단 운영사례의 시사점 및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민관협치가 가장 이상적이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치의 범위와 권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 내 민관 상호간 신뢰형성이 충분히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즉 지역재단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관설관영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지역재단은 재정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역재단 조

직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해 지역재단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지리적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지역재단의 규모 및 지원서비스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은 각각 지역 내 인프라와 재정여건, 삶의 수준, 사회적 자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1> 설립·운영주체별 지역재단과 유사재단의 구분

| 구분 | 민설민영 | 민관협치 | 관설민영 |
|---|---|---|---|
| 특징 | · 민간에서 스스로 재원 확보 및 운영<br>· 설립·정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나, 지속가능성 높음 | · 민관 공동 출연하고 민간에서 운영<br>· 관의 재정지원은 설립초기에만 일부 지원 | · 관에서 설립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br>· 국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지속적 출연·보조금 지급 |
| 장점 | ·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사업 운영<br>· 지역사회의 자생력 강화와 발전 도모<br>·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시민의식 형성 | · 관설민영과 민설민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가능<br>· 재단홍보, 주민인식확산, 지역사회 신뢰형성이 용이<br>· 설립초기 재원마련 및 운영비 확보가 비교적 용이 | · 재단홍보 및 지역사회의 신뢰형성에 용이<br>· 재원마련 및 운영비 확보가 용이, 안정적 사업 운영<br>· 관과의 원활한 연계와 협의가 가능 |
| 단점 | · 주민인식 확산과 지역사회의 신뢰형성에 시간이 걸림<br>· 설립과 정착에 어려움<br>· 기금모금 및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 · 민관협치의 범위설정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 초래<br>· 지역 내 상호간 신뢰형성이 전제되어야 함<br>· 운영상 독립성 확보 필요 | · 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독립성이 낮음<br>· 자생력이 낮고 관 의존도가 높아 관의 지원이 단절될 경우 지속가능성이 낮음.<br>· 출연, 출자금 등에 대한 관의 부담감이 크다. |
| 주요 재원 | ·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 · 관의 출연금(초기)<br>·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 · 관의 출자·출연금, 보조·위탁사업비 |
| 비고 | · (재)천안풀뿌리희망재단<br>· (사)부천희망재단<br>· (재)성남이로운재단<br>· (사)안산희망재단<br>· (사)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br>· (재)김해생명나눔재단 | | (재)동작복지재단<br>(재)양천사랑복지재단 |

- 도시의 경우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이 많아 연계체계만 용이하게 구축된다면 상호협력이 가능하며 재원확보 및 시민참여 등이 용이함
- 반면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프라, 재정여건, 사회적 자본, 삶의 수준 등 지역자원이 부족하여 도시형보다는 지원서비스 및 연계방식, 사업유형(직접사업, 간접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의 중간 형태임
- 따라서 도시지역의 여건과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지역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재단의 설립 및 운영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지원서비스 및 연계방식, 역할범위 등을 규정해야 함

<표 4-2>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재단의 구분

| 구분 | 도시형 | 농산어촌형 |
|---|---|---|
| 특징 | · 재원확보와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좋음<br>· 유동인구가 많음<br>·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음 | · 재원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나쁨<br>· 유동인구가 적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음<br>· 지역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리더가 적음 |
| 주요 재원 | · 기업의 사회적 공헌기부금<br>· 시민과 단체의 기부금<br>· 크라우드펀딩 | · 지역사랑 등을 통한 기부금<br>· 지역신용기관의 출연금<br>(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br>· 크라우드펀딩 |
| 주요 사업 | · 공동체 기반조성 지원<br>· 공동체단체와 활동가 교육·지원<br>· 어린이·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br>· 도시빈곤과 차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 · 공동체 회복 지원<br>· 공동체 단체와 활동가 교육<br>· 노인의료지원 등 고령화세대 지원<br>· 농촌사회 공동화와 소외, 환경개선 지원 등 |
| 비고 | · (사)부천희망재단<br>· (재)성남이로운재단<br>· (사)안산희망재단<br>· (사)남동이로운재단 | |

※ 도농복합형(천안풀뿌리희망재단)은 도시형과 농산어촌형의 중간형태임

❍ 셋째, 지역재단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 또는 사업영역에 따라서는 크게 특화형과 통합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화형은 다시 지역경제형, 지역복지형, 지역공동체형, 지역재생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목적과 사업영역이 특정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재단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한국형 지역재단은 그 목적상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확충, 지역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 한국형 지역재단은 각각의 특화된 유형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목적 및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형 지역재단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아래 표의 모델유형(안)에서 제시하는 특화형, 통합형의 구분은 하지 않기로 함

<표 4-3> 사업목적 및 사업영역에 따른 (유사)지역재단의 구분

| 구분 | | 특성 | 비고 |
|---|---|---|---|
| 특화형 유사 지역재단 | 지역경제형 | • 환경개선, 복지증진, 의료, 공동체활성화, 지역재생 등 특화된 영역에 사업을 집중 및 한정 | 김해생명나눔<br>양천사랑복지재단<br>동작복지재단 |
| | 지역복지형 | | |
| | 지역공동체형 | | |
| | 지역재생형 | | |
| 통합형 지역재단 | | • 지역사회내 다양한 이해와 요구 및 이슈를 포괄하는 지역사회내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함 | 천안풀뿌리희망재단<br>부천희망재단<br>성남이로운재단<br>안산희망재단<br>남동이행복한재단 |

## □ 한국형 지역재단의 모델 유형(안)

❍ 상기와 같은 ① 지역재단의 설립과 운영 주체 ② 지역적 특성, ③ 설립형태

중, 설립·운영 주체와 지역적 특성만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지역재단 유형이 도출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형태는 세부 모델(안) 제시에는 표시

<표 4-4>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유형(안)

| 구분 | 도시형(①) | 농산어촌형(②) | 도농복합형(③) |
|---|---|---|---|
| 민설민영(A) | ①-A | ②-A | ③-A |
| 민관협치(B) | ①-B | ②-B | ③-B |
| 관설민영(c) | ①-C | ②-C | ③-C |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도시형과 결합한 도시형-민설민영(①-A), 도시형-민관협치(①-B), 도시형-관설민영(C)의 3가지 유형과 농산어촌형과 결합한 농산어촌형-민설민영(②-A), 농산어촌형-민관협치(②-B), 농산어촌형-관설민영(②-C)의 3가지 유형, 도농복합형과 결합한 도농복합형-민설민영(③-A), 도농복합형-민관협치(③-B), 도농복합형-관설민영(③-C)의 3가지 유형 등 총 9개 유형으로 지역적 특성과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되어 질 수 있음
- 한편 각각의 유형은 그 설립과 운영주체에 따른 특징과 장점 및 단점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지니게 됨
- 따라서 각각의 유형별 여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역적 분석을 기반으로 어떠한 형태의 지역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가령 농산어촌형의 경우 지역사랑 등 지역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기부금 모집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시형 또는 도농복합형의 경우 지역 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제도로서 지역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을 것임

❍ 정리하면,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유형으로서 관에 의한 과도한 지원은 지역재단 고유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음으로 인해 관설민영의 형태는 제외하고 설립 및 운영방안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구분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음.

❍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사회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조직들과 지원 조직들이 복잡하게 얽어있고, 상호작용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생태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재단의 역할 등이 더욱 면밀하게 파악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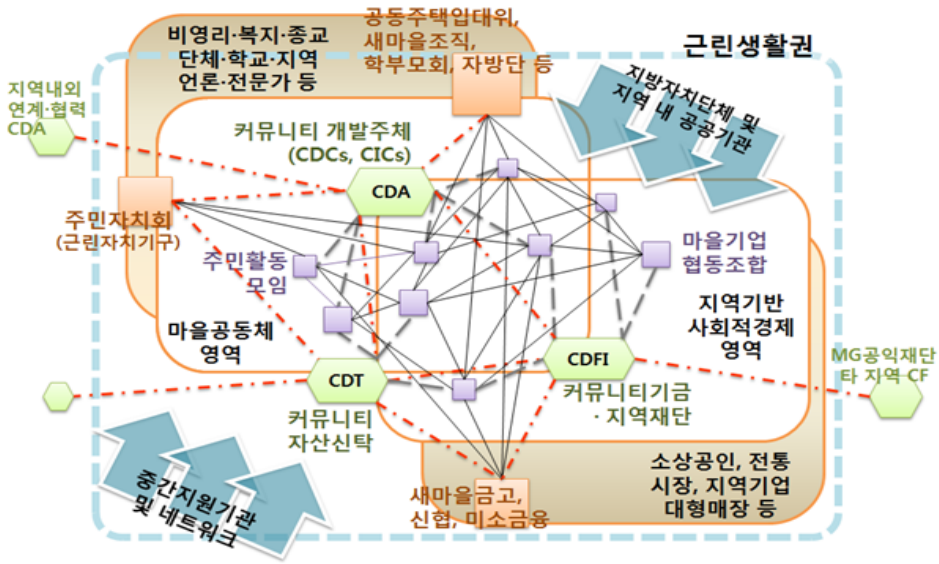


<그림 4-2> 지역사회(공동체) 생태계 개념도(전대욱, 2015)

<표 4-5> 한국형 지역재단 모델 유형(안)별 특징

| 구분 | 도시형 | |
|---|---|---|
| 민설민영 | · 민간에서 스스로 재원 확보 및 운영<br>· 설립과 정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부금·운영비 확보가 어려움<br>· 지역사회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운영<br>·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 도모 | · 재원확보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기반이 좋음<br>· 유동인구가 많음<br>·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낮음 |
| 민관협치 | · 민간에서 설립하나 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민간에서 운영<br>· 중앙정부(행자부 등),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초기 설립 자본금 등 출연<br>· 설립부터 자생력을 고려하므로 정착 후 지속가능성이 높음<br>· 재단홍보 및 주민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신뢰 형성이 용이<br>· 민설민영에 비해 재원마련 및 운영비 확보가 비교적 용이<br>· 민관합치의 범위설정이 불명확하면 혼란 초래<br>·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함 | |
| 구분 | 도농복합형 | |
| 민설민영 | · 민간에서 스스로 재원 확보 및 운영<br>· 설립과 정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부금·운영비 확보가 어려움<br>· 지역사회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운영<br>·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 도모 | · 재원확보 및 시민 참여를 위한 기반은 중간<br>· 농촌과 도시가 상존하여 주민간의 이질감 존재<br>· 대도시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낮음 |
| 민관협치 | · 민간에서 설립하나 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민간에서 운영<br>· 중앙정부(행자부 등),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초기 설립 자본금 등 출연<br>· 설립부터 자생력을 고려하므로 정착 후 지속가능성이 높음<br>· 재단홍보 및 주민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신뢰 형성이 용이<br>· 민설민영에 비해 재원마련 및 운영비 확보가 비교적 용이<br>· 민관합치의 범위설정이 불명확하면 혼란 초래<br>·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함 | |

| 구분 | 농산어촌형 | |
|---|---|---|
| 민설민영 | · 민간에서 스스로 재원 확보 및 운영<br>· 설립과 정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부금·운영비 확보가 어려움<br>· 지역사회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운영<br>·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 도모 | · 재원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나쁨<br>· 유동인구가 적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음<br>· 지역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리더가 적음 |
| 민관협치 | · 민간에서 설립하나 관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민간에서 운영<br>· 중앙정부(행자부 등),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서 초기 설립 자본금 등 출연<br>· 설립부터 자생력을 고려하므로 정착 후 지속가능성이 높음<br>· 재단홍보 및 주민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신뢰 형성이 용이<br>· 민설민영에 비해 재원마련 및 운영비 확보가 비교적 용이<br>· 민관합치의 범위설정이 불명확하면 혼란 초래<br>·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함 | |

| 지역재단 설립모델 ① (도시형- 민설민영형) 예시 | |
|---|---|
| 설립·운영주체 | ·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민간 |
| 법인의 성격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 설립단위 | · 시군구 또는 시도 |
| 설립자본금 | · 2억~5억원 |
| 설립기간 | · 1년~2년 |
| 주요재원 | ·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br>· 기업의 사회적 공헌기부금<br>· 크라우드 펀딩 |
| 행정지원 | · 지자체의 행정지원 무 |
| 운영의 독립성 | · 매우 높음 |
| 설립 시 사무국 인원 | · 3명(사무국장 1명 포함) |
| 주요 특징 | · 재원확보와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좋음<br>·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음<br>· 민간에서 스스로 설립·운영재원을 확보하므로 설립재원과 운영비 마련이 어려움<br>·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독립적 사업이 가능<br>· 설립과 정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정착에 성공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높음<br>·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br>· 지역재단 인지도가 낮고 신뢰형성에 시간이 걸림 |
| 주요사업 | ·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br>·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br>· 지역공동체단체와 활동가 지원<br>· 도시빈곤과 차별, 사회적 약자 지원 등<br>· 어린이·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

| 지역재단 설립모델 ② (도시형- 민관협치형) 예시 | |
|---|---|
| 설립·운영주체 | ·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민간(지자체의 협조·지원) |
| 법인의 성격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 설립단위 | · 시군구 또는 시도 |
| 설립자본금 | · 3억~10억원 |
| 설립기간 | · 1년 |
| 주요재원 | ·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br>· 기업의 사회적 공헌기부금<br>· 크라우드 펀딩<br>· 지자체의 출연금 |
| 행정지원 | ·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br>-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br>- 주민홍보 및 업무지원, 업무협약 등 |
| 운영의 독립성 | · 높음(운영의 독립성확보가 중요) |
| 설립 시 사무국 인원 | · 3명(사무국장 1명 포함) |
| 주요 특징 | · 재원확보와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좋음<br>·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음<br>·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운영재원을 확보하므로 민설민영보다 재원확보가 용이<br>· 관의 협조로 지역현안·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가능<br>· 설립과 정착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나, 정착에 성공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높음<br>·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기부문화 향상과 시민의식 함양<br>· 지역재단 인지도 제고와 신뢰형성에 유리 |
| 주요사업 | ·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br>·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br>· 지역공동체단체와 활동가 육성·지원<br>· 어린이·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br>· 적극적 공익사업에 지원<br>· 도시빈곤과 차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

| 지역재단 설립모델 ③ (농산어촌형- 민설민영형) 예시 | |
|---|---|
| 설립·운영주체 | ·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민간 |
| 법인의 성격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 설립단위 | · 시군구 또는 시도 |
| 설립자본금 | · 1~2억원 |
| 설립기간 | · 1년~2년 |
| 주요재원 | ·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br>· 지역신용기금의 출연금(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br>· 크라우드 펀딩 |
| 행정지원 | · 지자체의 행정지원 무 |
| 운영의 독립성 | · 매우 높음 |
| 설립 시 사무국 인원 | · 3명(사무국장 1명 포함) |
| 주요 특징 | · 재원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약함<br>· 유동인구가 적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음<br>· 민간에서 스스로 설립·운영재원을 확보하므로 설립재원과 운영비 마련이 어려움<br>·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독립적 사업이 가능<br>· 설립과 정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정착에 성공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높음<br>·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주민의식 향상<br>· 지역재단 인지도가 낮고 신뢰형성에 시간이 걸림 |
| 주요사업 | ·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br>·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br>· 지역공동체단체와 활동가 지원<br>· 농촌사회 공동화와 소외, 환경개선 지원 등<br>· 노인의료지원 등 고령화세대 지원 |

| 지역재단 설립모델 ④ (농산어촌형- 민관협치형) 예시 | |
|---|---|
| 설립·운영주체 | ·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민간(지자체의 협조·지원) |
| 법인의 성격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 설립단위 | · 시군구 또는 시도 |
| 설립자본금 | · 1억~5억원 |
| 설립기간 | · 1년 |
| 주요재원 | ·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br>· 지역신용기금의 출연금(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br>· 크라우드 펀딩 |
| 행정지원 | ·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br>-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br>- 주민홍보 및 업무지원, 업무협약 등 |
| 운영의 독립성 | · 높음(운영의 독립성확보가 중요) |
| 설립 시 사무국 인원 | · 3명(사무국장 1명 포함) |
| 주요 특징 | · 재원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약함<br>· 유동인구가 적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음<br>·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운영재원을 확보하므로 민설민영보다 재원확보가 용이<br>· 관의 협조로 지역현안·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가능<br>· 설립과 정착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나, 정착에 성공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높음<br>·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기부문화 향상과 시민의식 함양<br>· 지역재단 인지도 제고와 신뢰형성에 유리 |
| 주요사업 | ·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br>· 지역공동체 회복 지원<br>· 지역공동체단체와 활동가 지원<br>· 농촌사회 공동화와 소외, 환경개선 지원 등<br>· 노인의료지원 등 고령화세대 지원 |

| 지역재단 설립모델 ⑤ (도농복합형- 민설민영형) 예시 | |
|---|---|
| 설립·운영주체 | · 지역대표, 주민 등 민간 |
| 법인의 성격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 설립단위 | · 시군구 또는 시도 |
| 설립자본금 | · 2~3억원 |
| 설립기간 | · 1년~2년 |
| 주요재원 | ·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b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부금<br>· 지역신용기금의 출연금(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br>· 크라우드 펀딩 |
| 행정지원 | · 지자체의 행정지원 무 |
| 운영의 독립성 | · 매우 높음 |
| 설립 시 사무국 인원 | · 3명(사무국장 1명 포함) |
| 주요 특징 | · 재원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은 중간수준임<br>· 농촌과 도시가 상존하여 주민 간 이질감이 존재함<br>· 대도시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애착심이 낮음<br>· 민간에서 스스로 설립·운영재원을 확보하므로 설립재원과 운영비 마련이 어려움<br>·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독립적 사업이 가능<br>· 설립과 정착에 장시간이 소요되나, 정착에 성공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높음<br>·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주민의식 향상<br>· 지역재단 인지도가 낮고 신뢰형성에 시간이 걸림 |
| 주요사업 | ·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br>· 지역공동체 기반조성과 회복 지원<br>· 지역공동체단체와 활동가 지원<br>·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 공동화, 환경개선 지원 등<br>·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 등 미래·고령화세대 지원 |

| 지역재단 설립모델 ⑥ (도농복합형- 민관협치형) 예시 | |
|---|---|
| 설립·운영주체 | ·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민간 |
| 법인의 성격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
| 설립단위 | · 시군구 또는 시도 |
| 설립자본금 | · 3~10억원 |
| 설립기간 | · 1년 |
| 주요재원 | ·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b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부금<br>· 지역신용기금의 출연금(새마을금고, 농축수협 등)<br>· 크라우드 펀딩 |
| 행정지원 | ·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br>-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br>- 주민홍보 및 업무지원, 업무협약 등 |
| 운영의 독립성 | · 높음(운영의 독립성확보가 중요) |
| 설립 시 사무국 인원 | · 3명(사무국장 1명 포함) |
| 주요 특징 | · 재원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은 중간수준임<br>· 농촌과 도시가 상존하여 주민 간 이질감이 존재함<br>· 대도시 부근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역애착심이 낮음<br>· 민관이 협력하여 설립·운영재원을 확보하므로 민설민영보다 재원확보가 용이<br>· 관의 협조로 지역현안·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가능<br>· 설립과 정착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나, 정착에 성공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높음<br>·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기부문화 향상과 시민의식 함양<br>· 지역재단 인지도 제고와 신뢰형성에 유리 |
| 주요사업 | · 기부금의 모집과 접수<br>· 지역공동체 기반조성과 회복 지원<br>· 지역공동체단체와 활동가 지원<br>·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 공동화, 환경개선 지원 등<br>·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 등 미래·고령화세대 지원 |

## 제2절 한국형 지역재단 설립 추진방안(안)

### 1. 설립 및 운영개요

□ 설립주체

❍ 지역재단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발기인을 구성함

□ 설립단위

❍ 시도, 시군구 등 행정구역 단위로 설립하는 것이 용이함

❍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

□ 설립유형

❍ 설립하려는 지역재단의 법적성격에 따라 사단법인 형태와 재단법인 형태로 구분

- 사단법인 형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으로 설립 시 자본금의 한도가 적어 재단법인 형태보다 설립이 용이하며,
- 재단법인 형태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으로서 운영상의 제약이 적어 사단법인 형태보다는 운영이 용이함

<표 4-6>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 비교

| 구분 | 사단법인 형태 | 재단법인 형태 |
|---|---|---|
| 법적 근거 |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 설립 준비 | · 정관 작성<br>· 창립총회 개최 | · 설립자 재산 출연<br>· 정관 작성 |
| 운영 | ·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 ·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
| 초기 재원 | ·설립추진위원회의 자발적 기부금 | ·설립자(1인 이상)의 출연 재산 |
| 장점 | · 자본금 한도가 적어 설립이 용이 | ·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사업결정이 가능하므로 처리가 빠름 |
| 단점 | · 사원총회를 통해 사업결정을 해야 되므로 처리가 늦음 | · 설립자본금에 제한이 있어 설립에 어려움 |
| 비고 | · (사)부천희망재단·(사)안산희망재단<br>· (사)남동이로운재단 | · (재)천안풀뿌리희망재단<br>· (재)성남이로운재단 |

❑ 설립절차

정관작성 ⇨ 주무관청 확인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와 설립신고

❍ 법인의 설립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민법[15]」에 의한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사단법인의 경우는 민법 40조에 의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과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예상,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함
- 한편 재단법인의 경우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 총회를 개최한 후에 설립대상 주무관청을 확인해야 함
- “정부조직법”과 정부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업무 위임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법인

15)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의 활동영역에 따라 그 관할 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유의해야 함
-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재단 설립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재단의 주무관청은 행정자치부, 시·도지사가 됨

❍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
- 먼저 설립할 법인명칭이 기존의 법인명칭과 동일한 명칭이 있는 지를 확인
- 제출하는 정관에 설립목적, 명칭 등의 민법 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그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단체구성 경과보고, 임원선임, 정관채택 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
- 또한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 기본서류 외에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 구비서류도 첨부하여 제출

❍ 설립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설립등기와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 기부금품 등 모집단체 등록[16)]
-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고 모집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함.
-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등록청이 되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등록청이 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17)]
- 일정 요건을 갖춰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신청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함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유효

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 ☐ 출연재산

❍ 재단 운영·사업비(지출)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예상 재단 운영·사업비(지출) : 00만원 = 00만원(인건비) + 00만원(운영비) + 00만원(사업비)

❍ 재단 운영·사업비(수입) : 출연금(기금) 운영수익금[18] + 수익사업 이익금 + 기부금

– 예상 재단 운영·사업비(수입) : 00만원 = 00만원(출연금 운영수익금) + 00만원(수익사업 이익금) + 00만원(기부금)

❍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매우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 ☐ 조직구성

❍ 한편 민법에 의한 법인은 민법제57조 등에 의해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일반적인 조직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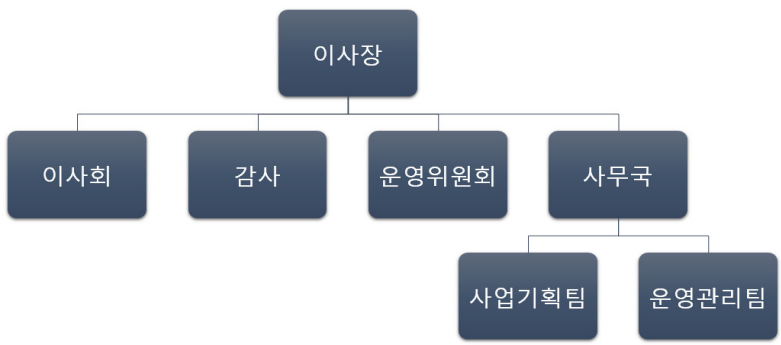


<그림 4-3> 지역재단의 일반적인 조직구성(안)

18) 운용 수익금: 출연금을 운용한 이자 수익(주로 출연금의 2~3%)

## ☐ 사업추진방향

❍ 지역재단의 사업추진방향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 둘째,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며,
- 셋째, 지역사회의 청년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여,
- 넷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 다섯째, 지역의 자립성 제고하여,
- 여섯째, 지역특성에 기인한 문제를 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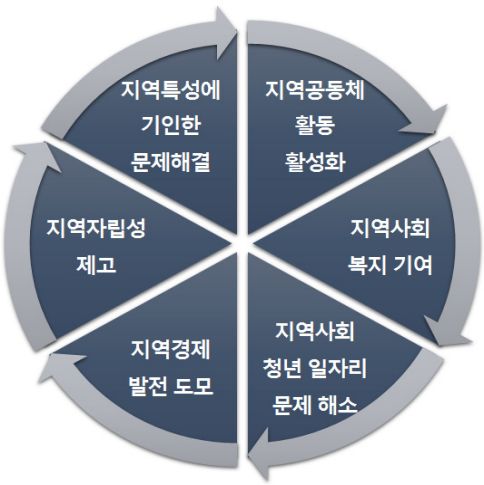


<그림 4-4> 지역재단 사업추진 방향(예시)

## ☐ 사업유형

❍ 지역재단의 사업은 크게 재원마련과 재원배분, 역량강화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재원마련 : 일반기금모금, 특별기금모금(기부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기금 운영)을 비롯하여 기부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금프로그램을 운영함
- 재원배분 : 사업영역유형(지역경제형, 지역복지형, 지역공동체형, 지역재생

형)에 따라 재원배분사업을 운영함

– 역량강화부문 : 지역활동가 및 지역공동체, 기관, 단체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및 마을조사,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사업발굴 및 홍보, 지역재단에 대한 인식제고, 지역공동체 및 단체의 사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 2. 지역재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그림 4-5> 지역재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예시)

### □ 지역재단 설립 및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현재 지역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지역재단에 대한 개별법 제정 등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 □ 행정기관간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 지역사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한 지역재단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지역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서 효율성을 제고함

### □ 지역재단 유관기관 협의 및 시범사업 추진

❍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 다음과 같은 유관기관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 또한 각각의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7> 지역재단 유관기관과의 협의 추진

| 유관기관명 | 협업방향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지역재단 기부금 확대를 위한 연합모금 지원 |
|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지역금고 | · 지역재단 설립 초기 출연재원의 일부를 지원 |

### □ 지역재단 신뢰성 증진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지역재단 연합회 설립 및 운영

❍ 다양한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재단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이 자신들이 기부하는 지역재단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초기 지역재단이 설립되었을 경우, 그 활동내용 등 운영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미미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부자들로부터 지역재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또한 지역재단을 설립할 때부터 가령 행정자치부와 같은 중앙부처가 지역재단의 설립을 인증해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재단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증진시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명망가들의 지역재단 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 지역재단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것임

❍ 한편 각각의 지역단위에 존재하게 될 지역재단을 대표하는 지역재단 연합회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서 각종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를 활성화하고 지역재단 상호간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재단 관련 매뉴얼 개발 및 기부활성화모델[19] 개발 및 보급

❍ 지역재단의 목적, 설립, 운영, 재원마련, 기부금 모금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

❍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 지역재단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성과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은 바로 활성화된 기부문화에서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도 시민들의 기부활성화를 통한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지역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부활성화모델(온라인기부포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부활성화모델은 ①기부컨텐츠 작성 및 관리하는 업무지원시스템, ②소액기부를 포함한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에 대한 지원 및 영수증 처리를 제공하는 기부지원시스템, ③기부검색 및 사용처 내역 등의 검색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부자지원서비스, ④기부현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정기보고서를 지원하는 기부운영지원시스템, ⑤국내포털 및 대형 NGO와의 원활한 연계를 꾀하는 기부채널제휴 등의 내용을 포함함

19) 김인규, 이상혁, 박철(2009) 기부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기부포털의 구성요소와 기대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헌) 제도화

❍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을 통해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한 형태로서 지역재단에 기금출연 및 지역재단 활동을 지원하게 함

❍ 기업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사회적,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정을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과 연계하여 제도화를 추진

□ 설립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

❍ 지역재단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립자본금이 충분하여야 하며, 이는 국내의 열악한 기부문화에 의해서는 초기에 충분한 설립자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역재단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영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앞서 언급된 지역재단 관련법 제정 노력과 이와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단 관련 조례 등을 통해서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또는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

□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에 의한 세제혜택 지원

❍ 개인과 법인기부금 모두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20] 또는 개인기부금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21]로 등록 지원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 사목
21)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받아야 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사단(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서류 제출 → 주무관청(설립허가기관) → 기획재정부 → 전자관보 또는 기획재정부/주무관청 홈페이지 공고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행정자치부(추천) → 기획재정부(지정)

## 3.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그림 4-6> 지역재단 운영재원 확보방안

## □ 민간모금과 기부금

❍ 민간으로부터의 모금과 기부금에 의한 지역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는 지역재단의 독립된 운영과 자율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나,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우선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최근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다수 대중들의 합목적적, 공익적 투자수단을 지역재단 설립재원 마련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의 연계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들이 일정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공헌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재단의 설립 및 운영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임

❍ 기업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공익의지 전달 및 신뢰 확보, 사회공헌 사업의 전문성 강화, 사회공헌 사업의 효율성 증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4-8> 유사재단의 자산규모

| 구 분 | 설립시 기업 자산 | 목표 자산 | 자산 규모 대비 목표 자산 비율 | 현재까지 출연 자산 | 2014 사업비 |
|---|---|---|---|---|---|
| 신한장학재단 | 194조 원 | 1,000억 원 | 0.052% | 1,097억 원 | 24억 원 |
| KB금융공익재단 | 262조 원 | 1,000억 원 | 0.038% | 595억 원 | 126억 원 |
| KT&G복지재단 | 4조 원 | 669억 원 | 1.683% | 2,373억 원 | 106억 원 |
| KRX국민행복재단 | 2조 원 | 1,000억 원 | 4.056% | 1,073억 원 | 26억 원 |
| 농협재단 | 116조 원 | 5,000억 원 | 0.431% | 4,300억 원 | 78억 원 |

❍ 즉 기업들이 출연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익재단을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재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정책사업 보조금 연계

❍ 고향희망심기운동은 정서상 애착이 있는 고향을 매개로 단기적으로는 고향을 방문하여 고향에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적으로는 고향사랑 종자돈 모금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운동임

<그림 4-7> 고향희망심기운동

- (고향봉사) 출향인사 등의 고향봉사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자부 '1365자원봉사시스템' 및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활용
- (고향기부) '고향사랑 종자돈' 모집, 출향인사 및 지역기반 기업의 기부 촉진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고향기부 프로그램 기획 등
- (고향방문) 고향방문 프로그램 운영 및 은퇴자·청년층 고향 정착 지원
- 고향희망기부 모금액의 모집처를 해당 지역재단에서 전담하는 방안

❍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사업과 연계

– 정부부처,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속가능한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재단을 위한 지역(공동체)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11개부처·청, 20개 사업('15년말 기준)이 존재하며, 연간 1조 2천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사업은 8,200여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이며, 2,5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음

<표 4-9> 부처별 마을공동체 관련 근거법 및 세부사업 현황

| 소관 부처 | 근거법 | 세부 사업 |
|---|---|---|
| 행정자치부 | • 전자정부법<br>•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 도서·접경지역 특성화사업,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희망마을 |
| 농림부 | • 농어촌정비법<br>•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br>• 농어업인 삶의질법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색깔있는마을, 체험휴양마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농촌공동체회사육성 |
| 국토교통부 | • 도시재생특별법<br>•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 |
| 기획재정부 | • 협동조합기본법 | • 협동조합 |
| 문화체육관광부 | • 지역문화진흥법 | • 문화마을조성사업, 관광두레시범사업, 문전성시프로젝트 |
| 고용노동부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사회적기업 |
| 환경부 | • 자연환경보전법 | • 자연생태우수마을 |
| 해양수산부 |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 • 어촌특화발전역량강화 |
| 산림청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산촌종합개발 |
| 문화재청 | • 문화재보호법 | • 문화재행복마을가꾸기 |
| 국민안전처 | • 자체 지침 | • 안전마을사업 |

❍ 통상적인 자금지원과 달리 성과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여, 지역사회가 일정한 성과를 만들 때까지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 주는 방식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기적 인내자본을 운용할 수 있음

□ 지역재단 운영재원 마련 방안

❍ 지역재단의 운영재원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에 의한 이자수익과 기부자의 기금을 펀드 또는 금융권 적립을 통한 이자수익 등이 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정자산 규모 이상의 설립자본금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수익이 주요한 운영재원일 수 있음

❍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부문화에 따라, 대규모 설립자본금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재단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최근 이자율 저하에 따른 이자수익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이자수익에 의한 지역재단의 운영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사회적 공헌에 따른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이상 지역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움

❍ 3장의 사례에서 살펴본 몇몇 지역재단의 사례에서와 같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운영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역사회 내 지역재단에 대한 인식제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재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지역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지역재단의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

❍ 한편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직인 지역재단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지역재단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임

❍ 지역사회 내에 설립되고 운영되는 지역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지역재단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역재단의 설립 및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부록 참고 6 참조)

□ 지역재단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재단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부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기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재단을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할 때,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재단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시 행정관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무실의 저렴한 임대를 통한 간접지원 또는 민간경상보조와 같은 보조금 등으로의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재단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기부자 관리

❍ 지역재단에 대한 홍보로 지역재단 및 기부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내 다양한 시민단체로부터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을 모

색하여 기부자 맞춤형 관리시스템 마련

- 지역사회 이슈를 조사 분석하고 기부자의 욕구를 철저히 파악 및 분석하는 등 기부자 중심의 관리시스템 운영
- 기부자가 기부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 및 운영
- 전문적인 상담지원(전문적 자산관리), 기부 전과정 참여 보장, 투자관리, 세제혜택 마련 등 기부자의 신뢰 증진과 자산관리 지원

### ☐ 지역기업의 지역재단을 통한 사회적 공헌 유도

❍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견실한 지역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의 창구로서 지역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재단은 지역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내 재산가, 명망가, 기부행위자들의 주요한 사회공헌의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임

### ☐ 지역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재단의 설립 및 운영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이를 위한 지역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재단에 대한 지역민들과 기부행위자 등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명망가를 발굴하고 이들을 지역재단 설립 발기인과 후원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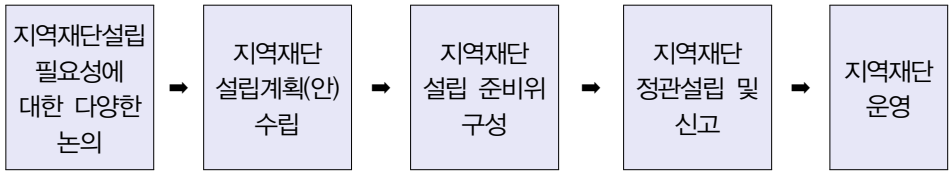


<그림 4-8> 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단계

## 5. 지역재단 관련 정책사업 추진

### ☐ 지역재단 시범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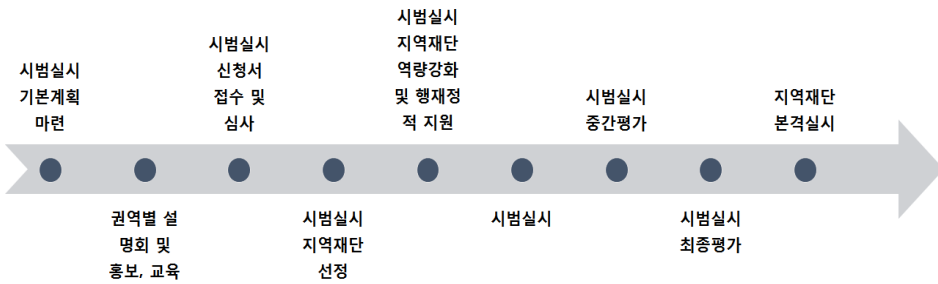


<그림 4-9> 지역재단 시범실시 단계

### ☐ 단계별 추진계획(안)

❍ 지역재단 설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으로서의 지역재단을 발족하여 그 성과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 후, 지역재단의 확산을 위한 지역재단 지원조직을 설립하는 단계로 추진함

| | | | |
|---|---|---|---|
| 지역재단 설립 방안 마련 ('16년 9월) | ➡ | 지역재단 시범지역 선정 ('16년 12월) | ➡ | 지역재단 시범설치 ('17년) | ➡ | 시범지역 확대 지원조직 설립* ('18년~) |

<그림 4-10> 지역재단 시범실시 추진계획(안)

* 지역재단설립을 지원하는 전국 단체 : CMF(미국), UKCF(영국), EFC(유럽)

### ☐ 재원규모

❍ 기존의 다양한 재단들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간 최소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

※ 운영비는 최소 2억원(연간) 소요 : 사무국(3명) 운영비 1.5억 + $\alpha$ (홍보, 워크숍 등)

<표 4-10> 지역재단의 재원규모별 주요활동

| 연간 재정규모 | 2~5억 | 5~10억 | 10~50억 |
|---|---|---|---|
| 주요활동 | 민간 비영리 단체 및 공동체기업 등에 재정지원(건당 3백만원 정도) | | |
| | | 적극적 공익활동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보증 | |
| | | | 장기 인내자본 운용(투·융자) |

## ☐ 시범사업의 추진 기본방향

〈 시범운영지역 선정 : 2개 지역 〉

► 선정기준
- 민간 중심의 리더쉽, 주민참여도, 지자체의 관심 정도
- 지역의 단체, 기업, 인구, 기부문화 등 사회적 여건
- 지역재단 필요성 인식 및 설립준비 여부 등

► 선정방법 :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기준

❍ 발전 가능성
- 추진기구 및 상설사무국의 운영 활성화 정도
- 사업이 활발하여 지속가능발전 가능성
-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고 실천역량이 확보되어 있거나 향후 역량강화 가능성

❍ 이행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재단 관련된 지원의지와 기획부서 등 관련부서의 지원계획의 분명한 표현
- 실천계획의 현실성, 행정계획 반영, 추진체계의 구체성
-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투자 가능성

❍ 효과적 추진가능성

– 시범지자체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적 형평성과 파급효과를 보완적으로 고려

– 광역시, 도, 시·군·구 등 각 그룹별 특징을 반영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표 4-11> 지역재단 시범실시 대상지역 선정기준

| 구 분 | 항 목 | 주 요 내 용 |
|---|---|---|
| 발전 가능성 | 추진기구 및 사무국의 활성화 정도 | - 추진기구 운영현황/지원예산 및 행정지원 실적<br>- 상설사무국의 인원<br>- 운영/지원조례<br>- 사업 추진실적의 적극성 |
| | 지속가능발전 정도 | - 지속가능발전의 적정성<br>- 실천계획 내용의 적정성 |
| |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실천역량 | -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현황<br>-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및 지원현황<br>- 민관협력 사례 |
| 실현 및 추진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의지와 관련부서의 지원 계획 |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의지<br>- 기획부서 등 관련부서의 지원계획<br>- 행정지원 계획 |
| | 설립운영계획의 구체성 | - 실천계획<br>- 실천계획 반영(안)<br>- 추진체계 계획(안) |
| | 물적·인적자원의 투자 가능성 | - 물적 자원의 투자/확보 가능성<br>- 인적 자원의 투자/확보 가능성 |
| 총 점 | | |

## ☐ 지역재단 단계별 지원 정책

❍ 지역재단 조성기는 민관주체별 기초교육, 컨설팅지원, 후원자 모집지원(홍보), 출연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재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재단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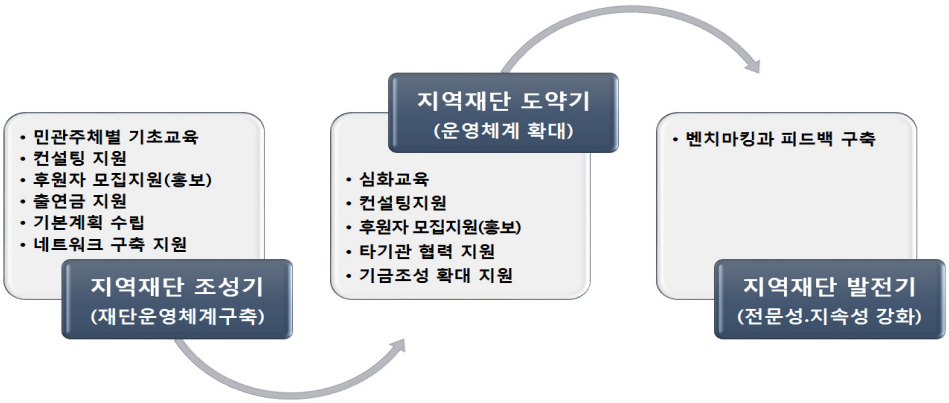


<그림 4-11> 지역재단 단계별 지원정책

❍ 지역재단 도약기에는 지역재단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며, 타기관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지역재단 기금조성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재단의 운영체계를 확대하는 단계임

❍ 한편 지역재단이 도약기를 거쳐 지역재단의 발전단계에 이르면 지역재단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벤치마킹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지역재단 연합회를 구성하고 협력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함

## ☐ 지역재단 모델유형(안) 정리 및 핵심요약

❍ 지역재단의 설립·운영주체 및 지역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설립·운영주체별 모델 유형〉

| 구분 | 민설민영 | 민관협치 | 관설민영 |
|---|---|---|---|
| 형태 | 민간설립, 민간운영 | 민간설립(관의 지원), 민간운영 | 관에서 설립, 민간운영 |
| 재원 |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등 | ·기부금 + 출연금(초기) 등 | ·관 출자·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
| 장점 | ·지역여건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운영<br>·지역사회의 자생력 강화 | ·설립부터 자생력을 고려하므로 정착 후 지속가능성이 높음<br>·지역사회 신뢰형성이 용이<br>·민설민영에 비해 재원마련 및 운영비 확보가 비교적 용이 | ·단기간에 설립과 정착이 가능<br>·설립재원, 운영비확보가 용이<br>·지원범위가 명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
| 단점 | ·설립과 정착에 장시간 소요<br>·기부금, 운영비 확보 어려움 | ·민관합치의 범위설정이 불명확하면 혼란 초래<br>·운영상 독립성 확보가 중요 | ·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자율적인 사업 추진 곤란<br>·관의 지원이 단절될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낮음 |
| 사례 | 부천희망재단,<br>성남이로운재단 등 | | (시흥시 1% 복지재단) |

〈지역특성에 따른 모델 유형〉

| 구분 | 도시형 | 농산어촌형 |
|---|---|---|
| 특징 | ·재원확보와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좋음<br>·유동인구가 많음<br>·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낮음 | ·재원확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이 나쁨<br>·유동인구가 적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음<br>·지역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리더가 적음 |
| 재원 | ·기업의 사회적 공헌기부금<br>·시민과 단체의 기부금, 크라우드펀딩 등 | ·지역사랑 등을 통한 기부금, 크라우드펀딩<br>·지역신용기관(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출연금 등 |
| 주요 사업 | ·공동체 기반조성 지원<br>·공동체단체와 활동가 육성·지원<br>·어린이·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br>·도시빈곤과 차별, 사회적 약자 지원 등 | ·공동체 회복 지원<br>·공동체 단체와 활동가 육성<br>·노인의료지원 등 고령화세대 지원<br>·농촌사회 공동화와 소외, 환경개선 지원 등 |

※ 도시형과 농산어촌의 중간형태로 도농복합형이 있음

❍ 지역재단의 설립촉진과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민설민영보다는 민관협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원마련이 어려운 농산어촌에서는 자본금 한도가 적은 사단법인 형태로, 상대적으로 재원마련이 용이한 도시에서는 사단법인에 비해 활동제약이 적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지역재단 사업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간중심 리더쉽, 주민참여도, 지자체 관심 정도에 따라 2~3개 지역을 선정하고, 단계별 정책지원을 추진하여야 함

❍ (제언) 본 연구 결과 지역재단의 설립·확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나,

– 지역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와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동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역재단 행·재정지원 방안 마련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제5장
# 결론 및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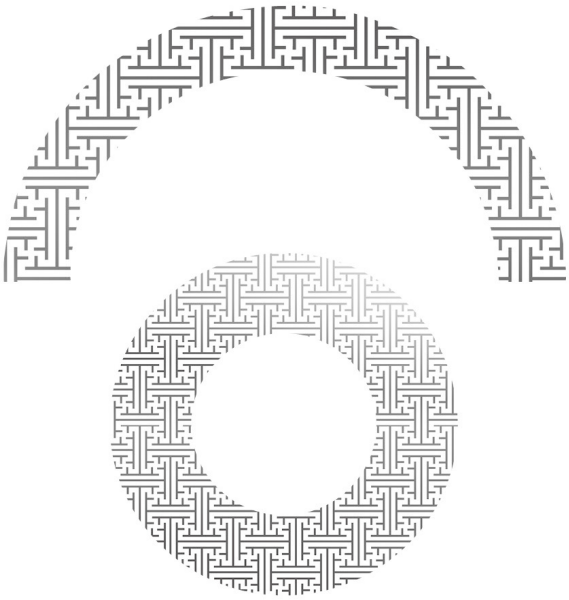

# 제5장 결론 및 요약

❍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재단의 현황과 실태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지역재단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재단 설립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주민주도의 생활자치가 강조되며,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특성 및 주민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하여,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을 획득하는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지역공동체와 주민주도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민간단위의 통합적 지원창구로써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재단은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의 재단”으로 특정지역 범위내에서 설립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기금을 모집하여 기금을 사용하며, 연대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음(김미현, 2014, 아름다운재단, 2007)

❍ 국내에는 천안풀뿌리희망재단, 부천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등의 지역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지역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음

- 국내 지역재단의 경우 사업유형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부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효율적인 지역자원을 동원하는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 재단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낮은 설립자본금과 재정적 지원 부재 및 기부에 대한 지역주민(국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국외에서의 지역재단은 1914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클리브랜드 재단을 시작으로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산·발전되고 있으며, 현재 70여국가에서 1,840개 이상의 지역재단이 존재함(WINGS, 2014)

- 외국 지역재단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기부자의 욕구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기부자들이 기부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기부자의 지속적인 기부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형 지역재단은 전통적인 지역재단의 정의와 같이 재정적부문만을 포함하는 형태의 지역재단(I)과 다양한 지역공동체 및 공익활동을 하는 민간비영리단체 등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부문과 역량강화부문, 행정적부문을 모두 포함한 형태의 지역재단(II)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그림 2-7)

- 이러한 지역재단(I)과 지역재단(II)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특징과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지원센터 등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지역의 현실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한국형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재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제정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재단 모델 유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재단의 설립·운영 주체 및 지역적 특징,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유형, 사업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우선, 설립 및 운영 주체별로는 민설민영, 민관협치, 관설민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리적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지역재단의 규모 및 지원서비스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재단이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 또는 사업영역에 따라서는 크게 특화형과 통합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화형은 다시 지역경제형, 지역복지형, 지역공동체형, 지역재생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사업목적과 사업영역은 대다수 지역재단이 유사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구분기준에서 제외하면, 설립 및 운영주체와 지역적 특징에 의해, 다음과 같은 9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도시형과 결합한 도시형-관설민영, 도시형-민설민영, 도시형-민관협치의 3가지 유형과 도농복합형과 결합한 도농복합형-관설민영, 도농복합형-민설민영, 도농복합형-민관협치의 또다른 3가지 유형, 그리고 농산어촌형과 결합한 농산어촌형-관설민영, 농산어촌형-민설민영, 농산어촌형-민관협치 등 총 9개 유형으로 지역적 특성과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됨

❍ 지역재단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재단의 설립지원 및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다양한 행정기관간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단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시범사업의 추진
– 지역재단 신뢰성 증진을 위한 지역재단 인증제도 도입 검토와 지역재단 연합회 설립 및 운영
– 지역재단 관련 매뉴얼 개발과 기부활성화모델 개발 및 보급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헌) 수행을 지역재단과 연계 제도화
– 설립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또는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
–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록에 의한 세제혜택 지원

❍ 지역재단의 설립 및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민간모금과 민간 기부활성화를 통한 기부금 확대
–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의 연계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정책사업(고향세, 마을만들기) 보조금 사업과 연계

❍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단 관련 역할
- 지역사회내 지역재단에 대한 인식제고
- 지역재단관련 조례 제정 등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지역재단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기부자 관리 지원
- 지역기업의 지역재단을 통한 사회적 공헌 유도
- 지역재단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의 지원

❍ (제언)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재단의 설립·확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나,
- 지역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와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 필요함
-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재단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부문화 활성화와 가칭「지역공동체법」등을 통해 지역재단 행·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참고문헌】

김교성 외(2005),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쉽 강화 방안”

김미형(2014), 서울형 지역재단 모델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김미현(2013). 지역재단 설립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김미현(2014). 지역재단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김미현(2014),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진입 사례, 한국사회복지행정협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9-124

김성규 외(2012), 지역문화재단대상 재원조성컨설팅, 2012 예술경영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문진수(2013).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북돋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2007). 커뮤니티 임팩트를 위한 개입과정 연구: 북미지역 및 한국의 공동모금회 사례 중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한국 사회적 금융 연구원(2014). 강동구 지역기금(재단) 설립 방안 -민·관 협치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2012). “서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2012).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 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안 연구.

선진 지역재단 및 기관 운영사례 벤치마킹(2012), 미국 연수보고서

손원익(2000),『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송재봉(2015), 한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NPO·NGO센터)의 현황과 과제,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이상민 외(2012),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 아름다운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시리즈5

이용갑(2013), 남동이행복한재단 지원가능성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3년 기획연구과제

아름다운재단(2007), 지역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단 연구 보고서

양용희(2013), 한국의 지역재단과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NGO연구 제8권 제1호(2013): 65~82

전광현 외(2013), 강화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및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전대욱, 최인수, 박승규 (2012),「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최인수 (201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2)」, KRILA FOCUS 3-2월호
최인수, 김건위, 전대욱 (2013),「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1) 지역복지형과 안심마을형을 중심으로」, KRILA Focus 12월호
최인수 외 (2013), 강원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종기(2014), 지역재단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 두리지역복지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2009. 지역사회에서의 민간재원 활성화 방안-지역재단을 중심으로
WINGS(2012). Community Foundation Global Status Report.
WINGS(2014), WINGS Annual report 2014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Cleveland Foundation, Years Ended December 31, 2014 and 2013 With Report of Independent Auditors, Ernst & Young LLP.

# 부록1 국내 지역재단 현황

## ☐ 천안풀뿌리희망재단[22)]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설립개요>

| 명칭 | 천안풀뿌리희망재단 | | | | |
|---|---|---|---|---|---|
| 설립주체 | 민간 주도 |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유형 | 민설민영 |
| 설립목적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사업을 전개 | | | | |
| 설립절차 (출연방식) | 천안의 사회복지활동가 윤혜란씨가 2005년 막사이사이상 '떠오르는 지도자'부문을 수상하고 받은 상금 5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시작됨 이후 600여명의 시민이 기부한 3억 4,000만원을 설립기금으로 설립 | | | | |
| 설립기간 | 2006년 3월 ~ 2006년 8월 | | 설립일 | 2006년 8월 | |
| 조직구성현황 및 인원 | 설립초기 | 이사 12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감사 2인, 총 발기인 143명 | | | |
| | 현재 | 이사 11명, 감사 2명, 사무국 4명,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 | | | |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재정현황>

| 설립 자본금 | 3억 4,000만원 | | 설립시 행정 지원 | 무 |
|---|---|---|---|---|
| 현재자산규모 | 4억 3,047만원 | | | |
| 연간 수입·지출 내역 | 수입 | 3억 2,885만원 | • 재산수입(이자) 4,622,500원<br>• 기부수입 236,141,382원 (후원금 : 116,080,983, 모금행사 : 83.031.060원, 기금 : 37,029,339원)<br>• 사업 외 수입(이자, 예수금) 178,888원<br>• 기타 7,803,921원<br>• 전기이월금 80,107,840원 | |
| | 지출 | 3억 2,885만원 | • 인건비 95,892,826원<br>• 운영비 10,259,866원<br>• 일반사업비(모금행사비) 47,905,697원<br>• 배분사업비 77,743,598원<br>• 홍보사업 4,798,500원<br>• 조직육성 7,015,870원<br>• 기타 8,870,000원<br>• 차기이월금 76,368,174원 | |

22) http://www.hopefund.or.kr 및 재무상태표 및 2015년 결산보고, 2014년 연간보고서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사업내용>

| | | |
|---|---|---|
| 정관상 사업내용 | 1. 풀뿌리시민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 개발<br>2. 풀뿌리시민단체의 창립 지원 및 신규 공익사업 개발<br>3. 풀뿌리시민단체 활동가 교육훈련 지원<br>4.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br>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br>*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 | |
| 모금사업 | 1% 희망나눔기부 | • 1% 희망나눔기부<br>• 희망나눔가게(일터) : 희망나눔가게(일터)에 참여하여 수입의 일정액을 매월 기부(2014년 12월 기준 20곳 참여) |
| | 기금기부 | •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 |
| | 특별한 기부 | • 소중한 급여 1%기부<br>• 마라톤 완주 기념기부<br>• 송년모님 기부 등 |
| | 프로젝트기부 | • 프로젝트 기부 : 각종 동아리, 학생회, 학교 등에 나눔 |
| | 거리공연모금기부 | |
| | 모금행사참여기부 | • 기부골프대회, 나눔만찬회 |
| 배분사업 | 신규공익단체 조직을 지원 | • 해누림청소년센터 설립지원, 꿈찬 그룹홈 설립지원, 클로버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지원, 나우리한부모가족설립지원 |
| | 아동그룹홈 여가 지원 | • 아동그룹홈의 가족여행비 지원 |
| | 공익활동가의 역량강화 지원 | • 공익활동가의 해외연수지원, 가족여행지원<br>• 공익활동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매칭지원 |
| | 미래세대 희망교육 지원 | • 새내기 대학생 첫 등록금 지원(버팀목 장학금)<br>• 청소년 자립기반마련 자격증 교육비지원 |
| | 지구촌 나눔지원 | • 지구촌 나눔(방글라데시 우토바라마을 지원) |
| | 결식아동 조식지원 | • 결식아동 조식지원 |

## ☐ 부천희망재단[23)]

<부천희망재단 설립개요>

<table>
<tr><td>명칭</td><td colspan="5">부천희망재단</td></tr>
<tr><td>설립주체</td><td>민간 주도</td><td>설립유형</td><td>사단법인</td><td>유형</td><td>민설민영</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5">• 지역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를 지원<br>•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br>•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전망에 따른 지속가능한 자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br>• 지역사회의 폭넓은 인적, 물적,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음세대를 위한 기회를 찾고 도전</td></tr>
<tr><td>설립절차<br>(출연방식)</td><td colspan="5">• 2009년 부천지역재단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계획안을 발표하고 사례발표 워크샵을 실시<br>• 2010년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 40명이 설립을 제안하여 준비위원회 결성<br>• 2011년 부천희망재단 발기인을 모집하고 3월 29일 9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창립</td></tr>
<tr><td>설립기간</td><td colspan="3">2009년 ~ 2011년 3월</td><td>설립일</td><td>2011년 3월</td></tr>
<tr><td rowspan="2">조직구성현황<br>및 인원</td><td>설립초기</td><td colspan="4">상임이사 1(무보수), 직원2명, 총 발기인 90명</td></tr>
<tr><td>현재</td><td colspan="4">이사회, 운영위원회, 모금위원회, 배분위원회, 사무국<br>이사진 15명, 감사 2명, 사무국5명</td></tr>
</table>

<부천희망재단 재정현황>

<table>
<tr><td>설립 자본금</td><td colspan="2">5억원(순수 모금으로 마련)</td><td>설립시 행정 지원</td><td>무</td></tr>
<tr><td>현재자산규모</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연간<br>수입·지출<br>내역</td><td>수입</td><td colspan="3" rowspan="2">연 5억원 내·외 수입 및 지출</td></tr>
<tr><td>지출</td></tr>
</table>

23) http://www.hopefoundation.or.kr/ 및 부천희망재단 명분서

<부천희망재단 주요사업>

| | | |
|---|---|---|
| 정관상 사업내용 | 1.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전개<br>2.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조성<br>3.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br>4.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전개<br>5. 기부문화 발전과 공익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br>6.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육성지원<br>*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부동산임대사업 및 전대사업, 도서 출판사업, 교육사업, 연구 및 컨설팅사업,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기타 수익사업 등) | |
| 모금사업 | • 정기기부(만세클럽 만원으로 세상을 바꾸는 후원회원 가입), 일시기부(원하시는 금액과 용도로 약정), 유산기부(유산의 일부를 기부)<br>• 사업자 기부 : 월매출액의 일부 기부<br>• 첫손님가게 : 우리동네 기부가게인 첫손님가게를 통한 첫손님 결재금액 기부, 첫손님가게 현판 부착<br>• 맞춤형 기부협약 : 법인이 희망하는 기부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기부프로그램을 구성<br>• 사회공헌 MOU (희망재단 · ○○기업) 체결 : 공익마케팅을 통해 사회공헌에 착한 소비로 기업성장의 날개 부착<br>• 재능기부<br>• 시민들의 기부참여 문열기, 즐거운 일터 월급 끝전 모으기 : 부천시의회 1만원 이하, 부천시공무원들이 1천원이하 월급 끝전을 함께 기부 | |
| 배분사업 | 소외와 차별 | • 희망리어카(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리어카 제공)<br>• 1사1경로당 : 1사1경로당 (1개 기업체와 1개 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경로당 후원 및 지원<br>• 의료비지원사업 : 꼬마마라톤을 통한 장기투석 어린이 및 이웃 의료비 지원<br>• 새생명축하기금 : 부천 5개병원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이른둥이 및 싱글맘 영유아 긴급의료비 지원<br>• 신규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사업지원 : 신규 공익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개인이나 그룹을 발굴하여 직접 인큐베이팅하며 지역사회 공익인프라 구축 |

| | | |
|---|---|---|
| 배분사업 | 공익과 대안 | • 공익활동가지원사업 :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을 찾아내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해외연수, 힐링캠프 등)<br>• 푸른나무기금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기부화단 조성 등<br>• 개인 또는 단체의 지역인재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인재발굴 및 지원 등 |
| | 다음세대와 나눔문화 | • 저소득 아동의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비용 지원, 청소년 지원<br>• 그림책을 소재로 나눔 및 학습 공유<br>• 아동학대피해 예방기금 |

## ☐ 성남이로운재단[24)]

<성남이로운재단 설립개요>

| 명칭 | 성남이로운재단 | | | | |
|---|---|---|---|---|---|
| 설립주체 | 민간 주도 |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유형 | 민설민영 |
| 설립목적 | 성남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의 생활화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삶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 | | | | |
| 설립절차 (출연방식) | 2011년 6월 지역재단 설립 준비위원회(4명)를 구성하고 2011년 12월 33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발기인대회를 통해 2012년 5월 30일 재단법인 설립 | | | | |
| 설립기간 | 1년 | | 설립일 | 2012년 4월 | |
| 조직구성현황 및 인원 | 설립초기 | 이사 15인, 사무국 2명(사무국장 1, 직원1), 총 발기인 33명 | | | |
| | 현재 | 이사회(이사 14명), 감사 2명, 고문 2명<br>(모금위원회, 배분위원회, 기부컨설팅 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br>사무국 2명(사무국장 1, 직원1), 연구소 | | | |

<성남이로운재단 재정현황>

| 설립 자본금 | 1억 5천만원(자본금 5천, 운영비 1억) | | 설립시 행정 지원 | 무 |
|---|---|---|---|---|
| 현재자산규모 | 6,814만원 | | | |
| 연간 수입·지출 내역 | 수입 | 1억 7,471만원 | • 비지정후원금 : 84,542,339원<br>• 지정후원금 : 72,588,819원<br>• 모금행사 : 9,010,680원<br>• 예금이자수입 : 46,333원<br>• 기타수입 : 8,526,065원 | |
| | 지출 | 1억 7,006만원 | • 인건비 : 36,642,220원<br>• 운영비 : 9,066,970원<br>• 재산조성비(시설비 등) : 1,442,000원<br>• 모금행사 및 캠페인 : 14,734,930원<br>• 배분사업비 : 101.591.669원<br>• 기금개발 및 홍보 : 2,188,740원<br>• 조직육성 : 3,656,770원<br>• 교육사업비 : 1,045,000원 | |
| 재원 | • 나눔가게 :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가게<br>• 기부 컨설팅 : 개인과 가족, 단체, 기업별 맞춤형 기부 컨설팅 | | | |

24) http://www.goodfund.or.kr/ 및 2014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14 재정(운영성과표, 재무재표) 및 감사보고서

<성남이로운재단 주요사업>

| | | |
|---|---|---|
| 정관상 사업내용 | 1. 성남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지원<br>2. 개인 및 단체의 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br>3.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br>4.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br>5.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br>*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수익사업을 전개 | |
| 모금사업 | • 1%나눔기부 : 내 월급의 1%, 용돈의 1%, 가게수입의 1%<br>• 나눔가게 :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가게<br>• 기부 컨설팅 : 개인과 가족, 단체, 기업별 맞춤형 기부 컨설팅<br>• 정기기부, 일시기부, 재능기부 | |
| 배분사업 | 공익활동 지원 | •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공익활동 지원 |
| | 아동·청소년·미래세대 지원 | •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창의적 배움을 지원 |
| | 사회적약자, 소수자 지원 | •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차별적인 현실 개선 |
| | 재능기부 컨설팅 | •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업체의 법률 및 세무, 회계 컨설팅, 후원기부 세무 컨설팅, 유산기부 세무컨설팅, 문화예술 기부공연 컨설팅 등 |

## ☐ 안산희망재단[25]

< 안산희망재단 설립개요>

| 명칭 | 안산희망재단 | | | | |
|---|---|---|---|---|---|
| 설립주체 | 시민단체 주도 | 설립유형 | 사단법인 | 유형 | 민설민영 |
| 설립목적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사업을 전개 | | | | |
| 설립절차 (출연방식) | • 2011년 2월부터 창립 공론화 및 준비기간 구축시기 : 준비위원회 결성<br>• 2012년 5월 29일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통해 8월 설립 | | | | |
| 설립기간 | 1년 | | 설립일 | 2013년 5월 | |
| 조직구성현황 및 인원 | 설립초기 | | | | |
| | 현재 | 이사회 12명(모금위원회, 배분위원회), 사무국 | | | |

25) www.ashf.or.kr 및 2014년 안산희망재단 결산 법인보고

<안산희망재단 재정현황>

| 설립 자본금 | - | | 설립시 행정 지원 | 무 |
|---|---|---|---|---|
| 현재자산규모 | - | | | |
| 연간 수입·지출 내역 | 수입 (기금운영) | 5억 7,802만원 | • 이월 285,777,937원<br>• 기금 184,005,437원<br>• 물품기부 41,559,590원<br>• 재단후원 8,075,690원<br>• 지정기탁 58,606,000원 | |
| | 수입 (재단운영) | 6,550만원 | • 전기이월 1,980,116원<br>• 재단후원 52,622,837원<br>• 기금운영비 10,902,655원 | |
| | 지출 (기금운영) | 5억 7,802만원 | • 차기이월 117,047,210원<br>• 기금 342,705,509원<br>• 물품기부 41,559,590원<br>• 재단후원 8,075,690원<br>• 지정기탁 57,884,000원 | |
| | 지출 (재단운영) | 6,550만원 | • 운영관리비 14,662,680원<br>• 인건비 43,154,340원<br>• 사업비 3,783,200원<br>• 차기이월 4,205,388원 | |

<안산희망재단 주요사업>

| 정관상 사업내용 | 1. 건강한 삶과 자활기반 조성 사업<br>2. 대안적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br>3. 지역사회 공감과 지지를 통한 지역발전사업 |
|---|---|
| 배분사업 | • 교육복지 멘토링 지원사업 : 사제동행 멘토링사업(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사와 학생이 1:1 또는 1:2로 매월 1회 자유로운 문화활동 지원),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br>• 고려인 동포자녀 공부방 마련 지원사업<br>• 이주여성 쉼터 마련 지원사업<br>• 희망1004 저금통 보급사업<br>•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br>• 희귀 난치병 환우를 위한 희망 1004나눔 콘서트 지원사업 |
| 모금사업 | • 희망1004기금<br>• 기부자 특별목적기금(지정기탁)<br>• 공익기금<br>• 재단후원 |

## ☐ 남동이행복한재단[26)]

<남동이행복한재단 설립개요>

| 명칭 | 남동이행복한재단 | | | | |
|---|---|---|---|---|---|
| 설립주체 | 시민단체+지자체 | 설립유형 | 사단법인 | 유형 | 민설민영 |
| 설립목적 | 주민과 기업의 참여로 나눔과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 | |
| 설립절차 (출연방식) | 지역재단 설립을 통한 남동구 주민의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과 동복지위원회의 안정적 지원체계로 인천 지역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2012년 9월 지역재단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발기인을 모집했고, 2013년 상반기 1·2차 제안자 모임을 거쳐 2013년 7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함 | | | | |
| 설립기간 | 1년 | | 설립일 | 2013년 10월 | |
| 조직구성현황 및 인원 | 설립초기 | | | | |
| | 현재 | | | | |

<남동이행복한재단 재정현황>

| 설립 자본금 | - | 설립시 행정지원 | 남동구가 조례 제정과 출연금 제공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위탁과 같은 지원은 없지만 지자체의 비공식적 지원 |
|---|---|---|---|
| 현재자산규모 | - | | |
| 연간 수입·지출 내역 | 수입 2억 8,881만원 | | • 재단후원(회비) 13,700,000원<br>• 재단후원(기부금) 9,770,000원<br>• 지정기금 141,578,149원<br>• 모금사업(열린음악회, 일일찻집) 75,960,000원<br>• 이월금 47,732,284원<br>• 잡수입(예금이자) 77,407원 |
| | 지출 2억 8888만원 | | • 지원사업 75,130,000원<br>• 모금사업 47,706,120원<br>• 홍보사업 1,259,600원<br>• 기부자관리비 1,876,300원<br>• 운영비(급여 및 임대료) 32,680,000원<br>• 그외 운영비 6,727,630원<br>• 준비금 123,508,190원 |

26) http://blog.naver.com/happy_found

<남동이행복한재단 주요사업>

| | |
|---|---|
| 정관상 사업내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저소득 주민 생계비 등 지원<br>2.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br>3.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전개<br>4.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개인, 단체 지원<br>5. 그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배분사업 | • 희망품앗이<br>• 따뜻한 겨울나기<br>• 노숙인 쉼터<br>• 어린이날 지원<br>• 장학금<br>• 결식아동 지원<br>• 긴급지원<br>• 마을만들기<br>• 홍보물제작, 저금통제작 |
| 모금사업 | • 일일찻집, 열린음악회<br>• 1%행복나눔<br>• 디딤장학금<br>• 공익기금<br>• 사회적경제기금<br>• 사랑나눔동호회<br>• 노숙인쉼터지원금 |

# 부록2 유사 지역재단 현황

## ☐ 동작복지재단[27]

<동작복지재단 설립개요>

| 명칭 | 동작복지재단 | | | | |
|---|---|---|---|---|---|
| 설립주체 | 지자체주도 |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유형 | 관설민영 |
| 설립목적 | 지역내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 혁신적이고 자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기부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 | | | |
| 설립절차 (출연방식) | 2003년 3월 구의회 복지재단 설립건의를 시작으로 9월 동작복지재단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제672호) 2004년 4월 발기인 총회를 거쳐 7월 설립 | | | | |
| 설립기간 | 1년 4개월 | | 설립일 | 2004년 7월 | |
| 조직구성현황 및 인원 | 설립초기 | | | | |
| | 현재 | 이사진 21명(이사장1명, 이사14명, 감사2명)<br>사무국 직원 3명 | | | |

<동작복지재단 재정현황>

| 설립 자본금 | 20억원 | | 설립시 행정 지원 | 출연금 +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
| 현재 자산규모 | 37억9,878만원 | | | |
| 연간 수입·지출 내역 | 수입 | 1,102,318,041 | • 재산수입 75,856,110원<br>• 보조금수입 76,787,949원<br>• 후원금수입 903,956,783원<br>• 출연금수입 45,000,000원<br>• 잡수입 717,199원 | |
| | 지출 | 1,192,264,694 | • 인건비 83,221,867원<br>• 업무추진비 11,765,470원<br>• 운영비 8,466,901원<br>• 일반사업비 1,088,810,456원 | |

27) http://www.smile-d.or.kr/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동작복지재단 주요사업>

| | |
|---|---|
| 조례상 사업내용 | 1. 복지시설 운영<br>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및 교부액 심사 지원<br>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br>4.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br>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br>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br>7.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모금사업 | • 동작행복실현사업 : 나눔의날, 객석나눔, 희망캠페인, 행복저금통 나누기 |
| 배분사업 | • 기획사업 : 1:1결연(Happy triangle)사업, 아동발달지원사업(CDA사업), Happy Fund<br>• 저소득틈새가정 지원사업 : 생계비지원사업, 교육비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급식비지원사업, 명절함께보내기사업, 사랑의쌀지원사업, 사랑의김장김치나누기사업, 난방비지원사업<br>• 기타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 |
| 기타사업 | • 복지기반구축지원사업 :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사회복지종사자교육지원사업, 지역복지협력네트워크사업<br>• 시설 전문화 기반조성사업 :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 |
| 운영사업 | •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br>• 구립어린이집 9개소<br>• 구립청소년 독서실 4개소<br>• 동작자원봉사센터 |

## ☐ 양천사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설립개요>

| 명칭 | 양천사랑복지재단 | | | | |
|---|---|---|---|---|---|
| 설립주체 | 지자체주도 |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유형 | 관설민영 |
| 설립목적 |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 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 | | |
| 설립절차 (출연방식) | 2005년 3월 민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및 조례공표<br>보건복지부(설립허가) | | | | |
| 설립기간 | | | 설립일 | 2005년 3월 | |
| 조직구성현황 및 인원 | 설립초기 | 발기인 11명 | | | |
| | 현재 | 이사회(이사장1명, 이사 12명, 이사2명)<br>사무국 5명 | | | |

참고 : http://www.eloveyc.or.kr/

## ☐ 재정현황

<양천사랑복지재단 재정현황>

| 설립 자본금 | 20억원 | | 설립시 행정 지원 | 양천구청 |
|---|---|---|---|---|
| 현재자산규모 | 26억3,016만원 | | | |
| 연간 수입·지출 내역 | 수입 | 2,043,543,000 | • 구출연금 260,000,000원<br>• 이자수익 61,337,911원<br>• 이월금 282,432,434원<br>• 후원금 1,422,851,894원<br>• 기타 16,921,000원 | |
| | 지출 | 1,574,433,461 | • 인건비(급여) 170,016,740원<br>• 인건비(부담금) 32,290,710원<br>• 운영비(일반운영비) 23,309,090원<br>• 운영비(업무추진비) 9,599,740원<br>• 목적사업비(이웃사랑, 조사연구, 네트워크, 홍보, 수탁시설운영) 34,980,650원<br>• 자체사업비(회의비 등) 24,182,570원<br>• 후원사업비(명절보내기 등) 1,279,965,774원<br>• 과년도지출(기금반납) 88,187원 | |

참고 : http://www.eloveyc.or.kr/

<양천사랑복지재단 주요사업>

| | | |
|---|---|---|
| 조례상 사업 내용 | 1.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br>2.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br>3.~4. 삭 제 <개정 2010.1.21><br>5.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br>6. 복지시설에 대한 수탁 운영<br>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br>8.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사업 | |
| 모금사업 | 이웃사랑사업 | • 기금모금(정기, 일시, 물품) |
| | 안정적인 복지자원 발굴 | • CMS 후원회원 모집, 모금이벤트,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모금활동 실시 |
| 베분사업 | • 1사 1후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br>• 푸드마켓지원, 명절보내기 사업, 희망나눔결연사업, 긴급생계비 등 지원사업, 저소득청소년교육비지원, 사랑의 쌀나누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하절기밑반찬지원, 복지시설지원등, 지정기탁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 |
| 기타사업 | 시설운영사업 |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양천구해누리푸드마켓, 구립곰달래 어린이집, 구립한별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5개소 등 수탁운영 |
| | 지역사랑사업 | •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비 지원, 복지시설 지원사업,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양천구 지역통계, 기타사업 등 |
| |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 • 우수 프로그램 공모와 모금을 통한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 |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직무별 직급별 교육 강화, 직원 연수들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간 연계체제 구축을 강화<br>• 민관교류와 다양한 직원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 강화 |
| | 수탁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 •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립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모범적인 운영사례 창출 |

## ☐ 생명나눔재단

<생명나눔재단 설립개요>

| 명칭 | 생명나눔재단 | | | | |
|---|---|---|---|---|---|
| 설립주체 | 민간 주도 | 설립유형 | 재단법인 | 유형 | 민설민영 |
| 설립목적 | 생명나눔재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삶의 가치를 높이고 공익적 문화를 실현시켜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목표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 | | | |
| 설립절차 (출연방식) | 2004년 7월 생명나눔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이사회구성 및 창립총회를 실시하여 설립 | | | | |
| 설립기간 | | | 설립일 | 2004년 9월 | |
| 조직구성현황 및 인원 | 설립초기 | | | | |
| | 현재 | 이사회(이사장1명, 이사12명, 감사2명)<br>고문 3명<br>사무국(사무총장 1몇, 간사3명) | | | |

<생명나눔재단 재정현황>

| 설립 자본금 | - | | 설립시 행정 지원 | x |
|---|---|---|---|---|
| 현재 자산규모 | - | | | |
| 연간 수입·지출 내역 | 수입 | 729,975,475 | • 재산수입 3,540,432원<br>• 후원금수입 281,575,116원<br>• 이월금 443,299,927원<br>• 잡수입(예금수입) 1,560,000원 | |
| | 지출 | 729,975,475원 | • 인건비 111,496,434원<br>• 운영비 3,900,000원<br>• 업무추진비 28,390,230원<br>• 사업비(소아암난치병지원) 285,063,760원<br>• 사업비(저소득층아동지원) 128,285,482원<br>• 사업비(저소득층노인지원) 87,642,743원<br>• 사업비(장애아동지원) 84,789,904원<br>• 예비비 696,922원 | |

<생명나눔재단 주요사업>

| | |
|---|---|
| 정관상 사업내용 | 1. 소아암을 비롯한 난치병 지원사업.<br>2.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br>3.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br>4. 장애아동 지원사업.<br>5.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긴급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br>6.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배분사업 | • 소아암/난치병 아동지원 및 캠페인<br>• 저소득층 아동지원 : 1사1촌 결의, 행복한 돼지분양, 교육문화지원, 긴급생활비 지원 등<br>• 장애아동지원 : 장애인 인권보호지원, 장애인문화사업, 장애인 직업재활교구지원, 홀로서는 엄마학교<br>• 저소득층 노인지원 : 느티나무사랑채(안부전화), 의료지원, 긴급지원, 솜솜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br>• 다문화가정지원 : 의료지원 |
| 모금사업 | • 정기기부, 일시기부, 특별기부(기념일, 문화공연, 유산 등), 캠페인, 물품기부<br>• 진행 중인 캠페인(초코렛백신) : 지역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료기부콘텐츠를 개발하여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가정을 돌보는 지역사회 공공복지정책 등 |
| 기타사업 | • 자원봉사 관리 및 운영<br>• 헌혈증 및 골수 기증 |

# 참고1 기부금품 모집 제도

❑ **관련규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 법 제4조 및 제5조**

❍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동법의 규제대상이 아님

❑ **기부금품의 모집제한 및 예외적 허용 ☞ 법 제5조제1·2항**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국가·지자체는 기업·국민에 비해 상대적 우월지위에 있어 기부금품 모집은 암묵적인 기부강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 국가나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도 재단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기부금품 모집 가능

※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인 경우,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인 경우,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 지자체의 지속적인 출연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는 법인·단체로 간주

## 참고2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 **세액공제 대상 :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의 주무관청 및 기재부 소관)**

❍ 근거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신청대상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행자부 및 기재부 소관)**

❍ 근거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 기부금의 세액공제 내역

| 기부자 | 적용 항목 | | 세제혜택 | 비고 |
|---|---|---|---|---|
| 법인 | 법정 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br>•국방헌금과 위문금품<br>•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br>•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공제한도 : 소득액 100%<br>•공제율 : 기부액 50%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 |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br>•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공제한도 : 소득액 100%<br>•공제율 : 기부액 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 개인 | 법정 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물품<br>•국방헌금과 위문금품<br>•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br>•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공제한도 : 소득액 100%<br>•공제율<br>-2천만 이하 : 기부액 15%<br>-2천만 초과 : 기부액 30%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 |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br>•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공제한도 : 소득액 30%<br>•공제율<br>-2천만 이하 : 기부액 15%<br>-2천만 초과 : 기부액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

# 참고3 비영리 재단·사단법인 비교

| 구분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정의 |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 |
| 설립근거 |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 설립절차 | | 요식행위인 합동행위<br>① 2명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br>② 주무관청의 허가<br>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요식행위인 단독행위<br>①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
| 필수기관 | 사원총회 | 최고 의사결정 기관 | 해당없음 |
| | 이사 |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 | |
| 임의기관 | 감사 |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등 | |
| 법인의 형태 | | 영리, 비영리 모두 가능 | 비영리만 가능 |
| 정관 변경 | | 사원총회 결의+주무관청의 허가 | 정관에 정관 변경방법 규정된 경우 + 주무관청 허가 |
| 활 동 | | 〈자율성〉<br>사원총회를 통해 의사 결정 | 〈타율성, 영속성〉<br>설립자의 의사에 구속 |
| 특 성 | | • 최초 자본금의 한도나 최저 자본금 규정 없음<br>• 회원제 및 사원총회 구성이 필수<br>• 의사결정이 회원들의 총회와 이사회 등 절차적 요소 중시<br>• 연간 사업예산에 충분한 회비 등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며 반대로 그 사단법인 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함<br>• 향후 해산시 잉여금이 있으면 안되며 잉여금이 있을시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국고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로 편입되어야함 | • 최초 자본금의 액수 제한 없음. 단, 자본금의 이자수익 등 자체 재단전입 수익만으로 연간 사업계획 충당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여야 함<br>• 한번 허가된 정관, 재단 규모 등은 추후 변경절차가 사단법인에 비해 까다로움<br>•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총회 없음)<br>• 향후 해산시 잉여금이 있으면 안되며 잉여금이 있을시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는 국고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로 편입되어야함<br>(재단은 재산의 집합이므로 향후 해산시 잉여금의 여부에 대해 유의) |
| 법인의 해산 | | 임의 해산 가능 | 임의 해산 불가 |
| | | 관련근거 : 「민법」 제77조<br>•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br>•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 | |

## 참고4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 정 의

❍ ① (자금수요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 ② (자금중개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 ③ (자금공급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

<크라우드펀딩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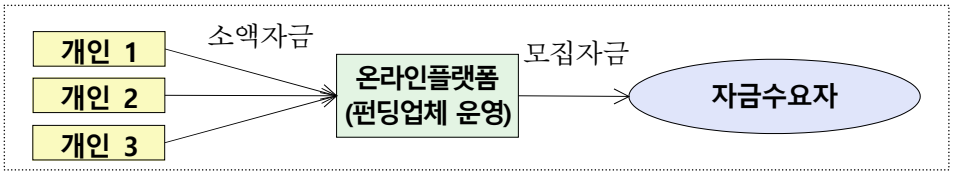


### ❑ 유 형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른 구분)

| 유 형 | 내 용 |
|---|---|
| 기 부 형 | • 자금지원자가 금전적 보상 없이 순수한 기부를 목적으로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 |
| 후 원 형 | • 자금지원자가 자금을 지원하고 비금전적 보상(제품, 공연티켓, 감사편지 등)을 제공받는 형태 |
| 대 출 형 | • 자금지원자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수요자에게 직접자금을 빌려준 뒤 원리금을 상환받는 형태 |
| 지분투자형 | • 자금지원자가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채무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을 수령한 뒤, 이후에 이자 또는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형태 |

## ❑ 사 례

❍ (영국) Bristol 시의 도시개선을 위한 ‘식용작물정원 조성’(3개소)

- 102명의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4,184파운드 모금에 성공
- 후원자로 참여한 시민들이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고 지역공간 개조 및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지역사회 신뢰와 공공서비스의 결합을 이룬 사례

❍ (충북) 충청북도 보은 삼가마을 도서관 짓기 마을 프로젝트

- 134명의 후원자들이 참여, 322만 원(목표액 200만 원) 모금에 성공
- 폐교위기에 몰린 삼가분교 내 창고를 개조하여 도서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폐교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펀딩 성공이후 기업의 도서 기증 등 협력 사업을 확장시킨 사례

## 참고5 현행 지역재단 설립절차

❑ 설립형태 : 민설민영

❑ 설립근거 :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가능

| 법인성격 / 구 분 |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 |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 |
|---|---|---|
| 설립절차 | **설립준비** ►법인의 명칭, 목적을 정한 후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개최**<br>↓<br>**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br>►**주무관청의 허가결정** 통지<br>↓<br>**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br>↓<br>**해산/청산** ►관할 법원등기소에 **해산 등기**<br>►주무관청에 **해산등기 신고**<br>►**해산종결 등기** (법무부) | **설립준비** ►**설립자의 재산 출연**<br>►법인의 명칭, 목적을 정한 후 **정관 작성**<br>↓<br>**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br>►**주무관청의 허가결정** 통지<br>↓<br>**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br>↓<br>**해산/청산** ►관할 법원등기소에 **해산 등기**<br>►주무관청에 **해산등기 신고**<br>►**해산종결 등기** (법무부) |
| 운 영 | • 사원총회(필수) : 최고 의사결정기관<br>• 이사(필수) : 법인을 대표, 사무 집행<br>• 감사(선택) :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등<br>• 사무국(선택) : 최소 2명(사무국장1, 사무원1) | • 이사(선택) : 법인을 대표, 사무 집행<br>• 감사(선택) :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등<br>• 사무국(선택) : 최소 2명(사무국장1, 사무원1) |
| 재원마련 | • 설립추진위원의 자발적 기부금 | • 설립자(1인 이상) 출연 재산 |
| | • 지역주민과 법인 등의 기부금(개인기부, 크라우드펀딩 등), 지역 내 기업의 출연금(CSR), 지역 새마을금고 지원금, 정부(지자체) 출연금 일부 지원 등 | |
| 주 요 사업내용 | •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 공익활동가의 지원·육성, 공동체 교육<br>•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등<br>•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공동체 기업 등의 공익활동 지원<br>• 기타 법령과 조례 등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등 | |

## 참고6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경상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사회복지·보건 사업의 개발 및 육성
3. 사회복지·보건서비스의 인적자원 개발
4.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의 운영·평가에 관한 지원
5. 사회복지·보건 관련 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6. 사회복지·보건 관련 공공재원의 지원기준 개발
7.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옹호
8.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9. 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또는 의뢰받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8호의 "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8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5호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개정 '10.8.9>

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0.8.9>

⑥ 이사장·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서를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기금)** ①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이하"자치단체"라 한다)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③재단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도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8조(확인·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재단은 설립 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7 성남이로운재단 정관

**< 전문 >**

성남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재단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삶이 보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성남이로운재단”을 세웁니다.

나눔은 ‘마음’입니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나눔은 ‘생명’입니다. 마음으로 나눈 물질은 생명을 품은 씨앗이 됩니다. 나눔은 ‘씨앗’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심겨지면 백배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나눔은 ‘함께 사는 재미’입니다.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지듯이,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큰 기쁨이 됩니다. 나눔은 ‘상호존중’입니다. 나눔을 통해 차별은 차이가 됩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고자 합니다. 나눔은 ‘만남’입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사람을 만나 이웃이 되고 서로를 돌아보며 정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나눔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살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을 키우는 것에 무엇보다 힘쓰겠습니다. 나눔은 ‘새로움’입니다. 꿈꾸지 못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상상이 없으면 새로운 창조적 삶도 없습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새로운 일을 꿈꾸는 즐거운 상상의 나래가 되겠습니다. 나눔은 마침내 ‘평화’입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자 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성남이로운재단’(영문표기 Seongnam GOOD Foundation)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성남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여럿이 함께 하는 창의적 나눔”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성남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성남 지역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지원
2. 개인 및 단체의 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4.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5.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이익을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법인 임직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며,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치활동 금지의 원칙)** 법인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8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9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

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1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업무보고)**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부금품의 공개)**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5조 (회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상환금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9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재단이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낙서 1부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
5.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법령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②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인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장 명예임원

**제24조 (고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약간 명을 이사회에서 본 법인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이사장이 3개월마다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위 3항의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 받았을 때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31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모금위원회, 배분위원회, 기부컨설팅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32조 (사무국의 설치와 구성)** ①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집행, 그리고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8장 연구소**

**제33조 (연구소의 설치와 구성)** ① 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

전,기부와 나눔 지역연구조사 등을 위한 커뮤니티연구소를 설치한다.

② 연구소에는 소장과 필요 시 직원을 두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 (법인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청산인이 된다.

**제37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